

418회 국회(정기회)

국 정 감 사

업 무 현 황

2024. 10. 10.

금 융 위 원 회

4 1 8 號 大 陸 (經 濟) 大 陸 經 濟 大 陸

大 陸 經 濟 大 陸

大 陸

大 陸

大 陸

大 陸

2 0 2 4 . 1 0 . 1 0

大 陸

大 陸

大 陸

大 陸

大 陸

목 차

I. 2024년도 예산집행사항	1
II. 2024년도 주요정책 및 사업계획 추진실적	5
III. 2023년도 국정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21
IV. 2024년도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77
V.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91
VI. 기타 사항	95

I. 2024년도 예산집행사항

□ 2024년 예산 집행현황('24.9월말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24년 예산 (예산현액)	지출
1. 인건비	33,037	23,204
2. 기본경비	9,518	6,280
3. 사업경비	1,461,011	1,450,962
[301] 핀테크 지원 사업	12,330	10,964
[303] 자금세탁방지추진	783	686
[304] FATF 교육기구 운영 지원	1,998	1,998
[501] FIU전산망구축운영(정보화)	4,635	2,950
[301] 금융관련 국제협력 및 금융중심지추진	937	865
[301] 금융소비자보호	101	63
[304] 금융그룹 통합감독 기반조성	38	18
[880]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희망적금)	221,788	221,788
[881]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56,000	56,000
[882]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	312,161	309,427
[884] 서민금융진흥원 출연(햇살론15)	90,000	90,000
[301]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1,255	628
[318] 산업은행 출자(혁신성장펀드)	240,000	240,000
[320] 산업은행 출자(지역활성화투자펀드)	100,000	100,000
[303]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330,000	330,000
[303]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기업구조혁신펀드)	50,000	50,000
[501] 금융위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1,551	1,017
[502] 금융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 사업(정보화)	1,585	865
[504] 자본시장조사인프라 운영(정보화)	323	100
[505] 금융위 대표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보수(정보화)	117	67
[301]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834	410
[302] 정책연구개발	720	150
[303] 금융정책알리기	844	495
[309]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407	160
[315] 회계의날	65	2
[316]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사업	200	113
[317] 금융의 날 행사	76	6
[318] 소송 수행 비용	800	727
[881]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출연	31,463	31,463
4. 내부거래(전출금)	2,500,000	2,500,000
•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	2,500,000	2,500,000
합 계	4,003,566	3,980,446

Ⅱ. 2024년도 주요정책 및 사업계획 추진실적

목 차

I.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	9
1.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	9
2.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 추진	10
3. 제2금융권 건전성 확보	11
II.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	12
1. 금융권 경쟁 촉진	12
2. 자본시장 선진화	13
3. 디지털금융 혁신	14
III. 시장규율 확립과 금융소비자 보호	15
1.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15
2.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	16
3.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안착	17
IV. 실물경제 지원 역할 강화	18
1.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18
2. 서민금융 안정적 공급	19
3. 반도체, AI 등 첨단산업 지원	20

I.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

1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

현황 및 추진실적

- 그간 안정세*를 보이던 가계부채는 금리인하 기대감, 부동산 거래 회복 등으로 증가세** 전환 후 확대되는 양상

*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BIS기준, %) : ('16)82.9 → ('21)98.7 → ('24.1Q)92.1

** 가계대출 증가추이(조원) : ('24.1)+0.9 (2)△1.8 (3)△5.1 (4)+4.1 (5)+5.3 (6)+4.2 (7)+5.2 (8)+9.8

➔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 필요

-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면밀히 관리하고 양적·질적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 추진 중

① '24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고 DSR 내실화 등 “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관행*”을 확립

* 가계대출시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시행('24.2월^{1단계}, 9월^{2단계})

② 금리변동에 따른 차주의 채무상환 리스크 경감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1)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비중의 점진적 확대를 위한 행정지도 시행('24.4월~)

2) 민간의 장가·고정금리 모기지 취급 확대를 위한 커버드본드 발행·유통기반 개선('24.5월~)

③ 과도한 채무부담으로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채무조정 등을 통해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24.10월)으로 금융권 채무조정 활성화 등

향후 계획

- 가계부채 증가세를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면서, 상환능력 심사(DSR) 중심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질적 구조개선 노력 지속

2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 추진

현황 및 추진실적

□ '22.하반기 이후 PF-ABCP, 채권시장 등 금융시장의 안정과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추진

□ '24.5.14일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 발표

<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5.14일) 주요 내용 >

- ①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 PF단계별 평가요소 구체화, 사업성분류 세분화(3→4단계), 금감원 사후관리 강화
- ② (원활한 PF자금공급) 증액공사비 추가보증 제공, 비주택 보증 신설, 과도한 수수료 관행 점검·개선
- ③ (사업성 부족 사업장 재구조화정리) 대주단협약 만기연장 요건 강화, 금융회사 신디케이트론(최대 5조원)
- ④ (시장·금융회사 건설사 안정화) 금융회사 한시적 규제완화, 금융회사 총당금 적립 「94조원+α」 적극집행

➔ 정책방향 발표 이후 부동산 PF 관련 주요 현황('24.6월말 기준)

① (1차 사업성 평가) 1차 평가대상* 중 유의(C), 부실우려(D) 여신은 21.0조원으로 전체 익스포져(216.5조원)의 9.7% 수준**

* 연체, 만기연장 3회 이상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1차 사업성 평가 실시

** 증자 등으로 자본비율이 상승하는 등 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고, 건설사·시행사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

② (금융권 PF대출 연체율*) 3.56%로 '24.3월말 대비 +0.01%p 상승하였으나 직전 분기(0.85%p)보다 상승폭이 크게 축소

* 금융권 PF대출 연체율(%) : ('22말)1.19 → ('23말)2.70 → ('24.3말) 3.55 → ('24.6말) 3.56

향후 계획

□ 1차 평가대상 이외의 전체 사업장에 대해 9월말 기준으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하고(~'24.11월), '24.12월부터는 상시평가 체계로 전환

□ 관계기관과 함께 부동산 PF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24.下)

3

제2금융권 건전성 확보

현황 및 추진실적

- 부동산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부동산 PF 대출 연체증가 등으로, 차주 신용도 및 상환능력이 미흡한 제2금융권 연체율이 상승*

* 저축은행(%) : ('22말) 3.41 → ('23말) 6.55 → ('24.6말) 8.36

상호금융(%) : ('22말) 1.52 → ('23말) 2.97 → ('24.6말) 4.38

- 다만, 충당금 적립 및 자본확충 등으로 충당금 적립률*과 자본비율**이 규제기준을 크게 상회하는 등 충분한 손실흡수 능력을 보유

* 저축은행 : ('22말) 113.4 → ('23말) 113.9 → ('24.6월) 113.8(규제비율 100%)

상호금융 : ('22말) 140.0 → ('23말) 128.7 → ('24.6월) 115.9(규제비율 100%)

** 저축은행 : ('22말) 13.15 → ('23말) 14.35 → ('24.6월) 15.04(규제비율 7~8%)

상호금융 : ('22말) 8.26 → ('23말) 8.13 → ('24.6월) 8.01(규제비율 2~5%)

- 연체율 상승이 제2금융권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도록 선제적 조치를 시행 중

① 부실채권의 경공매, 상·매각 등을 통한 적극적인 연체관리*를 유도

* ①(부동산 PF 대출)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른 유의부실우려 사업장 재구조화·경공매, 캠프 및 업권별 부동산 PF 정상화 펀드 운영 등

②(개인·개인사업자 대출) 과잉추심방지 등 채무자 보호를 전제로 캠프(연체채권 매입펀드, 새출발기금) 외 연체채권 매각처를 확대

② 제2금융권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 (저축은행·여전) 토지담보대출 충당금을 부동산 PF 대출 수준으로 증액('23.3월)

(상호금융) 부동산·건설업 대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기존 대비 130% 단계적 상향('24.2월)

향후 계획

- 연체율 및 유동성 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 '23.6월, 저축은행 유동성비율은 231.7%로 규제비율(100%)을 크게 상회

- 적극적인 PF 부실우려 사업장 정상화·정리와 함께 충분한 충당금 적립과 선제적인 자본확충 등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지속 유도

Ⅱ.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

1 금융권 경쟁 촉진

현황 및 추진실적

- '22년부터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국민들은 늘어난 금리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
- 국민들에게 보다 낮은 비용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권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지속 추진

① 기존 금융회사 간 대출·예금 금리경쟁 활성화

-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한 대출이자 부담 절감*
 - * 9.20일 기준, 26.9만명(15.1조원) 이동 → 금리 평균 1.52%p 하락(1인당 이자 年180만원 절감)
 - ※ 9.30일부터는 주거용 오피스텔 및 빌라 담보대출도 서비스 이용대상에 포함
- 예금중개서비스 활성화 추진
 - *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여 시범운영 중('22.11월~, 총 25개사)
- 은행권 대출·예금 금리 및 예대금리차 정보 공시 확대*('23.7월~)
 - * 은행별 대출금리를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로 구분하여 공시 등

② 은행권에 신규 경쟁자 진입을 촉진

- 금융권 경쟁도 평가 등 고려하여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방안 검토
- 기존 금융회사의 은행 전환(저축은행→지방은행→시중은행) 허용
 - * '24.5.16일, 금융위원회는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인가(32년만의 시중은행 인가)

향후 계획

-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심사기준 발표('24.11월) 및 관련절차 추진
- 지방은행·저축은행 경쟁력 강화, 예금중개서비스 제도화 등을 통한 실효성 있는 경쟁 추진

2 자본시장 선진화

현황 및 추진실적

-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이를 자본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나, 우리 자본시장은 경제·기업의 성과에 비해 저평가*
 - * 상장기업 평균PBR('14~'23) : 韓 1.04 / 美 3.64, 英 1.71, 日 1.40, 臺 2.07, 中 1.5
- ①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②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및 ③주주 가치 기업경영 확립 3대 축 중심의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 중
 - ① (공매도) 공매도를 금지하고('23.11.6일~'25.3.30일) 전산시스템 구축, 상환기간 제한 등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근본적으로 제도개선
 - ※ 9.26일 자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5.3.31일 시행 예정
 - ② (밸류업) 상장기업의 자발적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지원
 -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24.5.27일)을 마련하고 시장평가·투자 유도
 - ③ (주주보호) 물적분할·상장, 내부자거래, 의무공개매수, 자사주, 전환사채, M&A 등과 관련한 일반주주 보호방안 지속 마련·추진
 - ④ (기타) ATS 출범, 토큰증권 제도화, BDC 도입, 배당절차 개선 등을 통해 자본시장의 혁신과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

향후 계획

- (공매도) 하위법규 개정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25.3월까지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차질 없이 구축
- (밸류업) 밸류업지수 연계 ETF 출시('24.11월) 및 우수참여기업 표창('25.5월) 등을 통해 기업의 밸류업 노력 지속 독려
- (주주보호·기타) 하위법령을 조속히 정비하고 의무공개매수, ATS, 토큰증권, BDC, 배당 관련 국회의 법 개정 논의 적극 지원

3

디지털금융 혁신

현황 및 추진실적

- AI, 클라우드 등 새로운 기술 발달 등으로 금융·비금융간 융합과 경쟁이 촉진되면서 새로운 규제체계와 혁신지원 필요
- 기술의 발달에 맞춰 금융보안, 핀테크 및 데이터 활용 등 분야에 있어 금융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지원 중
 - ① 급변하는 IT 환경 下 혁신과 보안의 새로운 균형으로의 도약을 위해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 발표('24.8월)
 - * (내용) ①생성형 AI 활용 허용, SaaS 활용 범위 확대, ②연구·개발 분야 망분리 개선 등
 - ② 디지털 혁신금융생태계의 확고한 정착을 위해 핀테크 산업 활성화
 - * ①「핀테크 혁신펀드」 추가조성('20~'27년, 총 1조원), 정책금융지원 강화(연간 2,200억)
 - ②창업·성장 과정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법률·회계·기술 전문분야 컨설팅 제공
 - ③해외 데모데이 행사 개최, 현지 거점지원, 해외진출 정보(규제·시장동향 등) 제공
 - ③ 금융분야 생성형 AI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 금융권 공통의 데이터 확보, 신뢰도 제고 등 지원방안 마련
 - * ①오픈소스 AI 설치·활용 지원 플랫폼 구축('25.6월), ②금융권 특화 데이터 제공('25.3월~), ③생성형 AI 윤리 등을 반영한 「금융 AI 가이드라인」 개정 추진

향후 계획

- 자율보안-결과책임 원칙에 입각한 新 금융보안체계 구축을 위해 연구용역 등을 거쳐 금융보안법 제정 추진('25년~)
- 핀테크 산업 지원체계를 토대로 금융회사 협업 지원 및 해외 현지 프로그램 참가('25년 예산 신설) 등 해외진출 기회 제공
- 「금융권 AI 협의회」('24.3월~) 논의를 통해 「금융분야 생성형 AI 활용 지원방안」 관련 구체적 세부방안을 마련

Ⅲ. 시장규율 확립과 금융소비자 보호

1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현황 및 추진실적

- 금융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 그림자 금융 확대 등으로 인해 홍콩 H지수 ELS 사태, 위메프·티몬 사태 등 소비자 피해사례 발생
-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피해자 지원·재발방지 방안을 시행·마련 중
 - ① (홍콩 H지수 ELS) 손실이 확대됨에 따라 금감원은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자율배상을 위한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24.3.11일)
 - 은행권 등 H지수 ELS 판매사는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만기 손실이 확정된 소비자에 대하여 시급한 자율배상 정상 추진 중*
 - * 손실확정 계좌 17.0만건(원금 10.4조원, 손실금액 4.6조원)에 대하여 13.9만건이 배상에 동의했으며(동의율 81.7%), 평균 배상비율은 손실금액의 31.6%(‘24.9.13일 기준)
 - ② (위메프·티몬) 판매자 대금 미정산이 확대되어 즉시 관계부처 TF를 구성('24.7.25일)하고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 논의
 - 위메프·티몬 소비자 대상으로 환불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피해 판매자에게는 만기연장·상환유예 및 “1.6조원+@” 유동성을 지원*
 - * 위메프·티몬(8.9일~) 외 인터파크쇼핑·AK몰(9.9일~) 및 알렛츠(10.4일~)까지 대상 확대
☞ 1,426건(1,701억원) 만기연장·상환유예, 중진공·소진공·신보·기은 1,969억원 유동성 지원(9.30일 기준)
 - 미정산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정산자금 100% 별도관리, PG사 건전경영을 위한 관리·감독장치 도입* 등 제도개선안 발표(9.9일)
* PG사가 경영지도기준 위반시 단계적 조치(시정요구→영업정지→등록취소) 근거 마련

향후 계획

- (홍콩 H지수 ELS) 고난도 상품 판매 관련 다양한 전문가 의견과 해외사례를 검토하여 재발방지 방안 마련 추진
- (위메프·티몬) 공정위·금융위 공동 공청회(9.23일)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반영하여 신속히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발의 추진

2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

현황 및 추진실적

- 최근 디지털化·고도화된 수법을 동반한 민생피해 범죄가 지속
 - 성 착취 추심 등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를 통한 개인정보 불법유통 등 불법사금융 피해가 발생중
 - * (불사금 피해신고·상담건수) ('23上) 6,210건 → ('24上) 6,944건 (+11.8%)
 -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상화됨에 따라 간편송금, 통장협박 등 범죄 수법이 교묘해지고 피해 규모도 확대
 - * (보이스피싱) ('23上) 2,848건 / 781억원 → ('24上) 4,584건 / 1,230억원(경찰청)
- 관계부처(국조실, 법무부, 과기정통부, 경찰청 등)와 긴밀히 협력하여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 중
 - ① (불법사금융) “불법사금융 척결과 대부업 신뢰제고를 위한 대부업 제도개선방안” 발표('24.9.11일)
 - * 1)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2)불법사금융 범죄 처벌 강화(징역 5년, 벌금 2억 이하) 3)대부업대부중개사이트 등록요건 및 관리감독 강화, 4)대부업 퇴출재진입 제한강화 등
 - 「불법사금융 척결 TF」(국조실 주재)를 통한 수사·단속 강화, 정책서민금융공급, 채무자보호* 등 다각도로 지속 대응중
 - *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사업 확대('24.7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24.10월~) 등
 - ②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용자가 사전에 여신거래 차단을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24.8.23일)
 - *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은행,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 등 4,012개 금융회사(단위조합 포함)가 참여하여 신용대출, 카드론, 할부금융 등 여신거래 차단 정보를 공유
 - 또한, 통장협박, 간편송금을 이용한 신·변종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 절차 마련(「통신사기피해환급법」, '24.8.28일 개정·시행)

향후 계획

- (불법사금융)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24.9.11일 발표)”의 추진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입법되도록 국회 논의 적극 참여
- (보이스피싱) 향후 이용자가 여신거래 외 비대면 계좌개설 등도 차단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25.上)

3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안착

현황 및 추진실적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3.7.18일 제정 → '24.7.19일 시행
 - 이용자 예치금·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장치^① 마련, 불공정거래행위^②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근거 신설
 - ①이용자 예치금 이용료 지급, 임의적 입출금 차단 금지, 거래기록 보존, 보험공제 가입 등
 - ②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사기적부정거래 및 자기발행코인거래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 중
 - ① (자문기구 구성) 가상자산시장·사업자에 대한 정책 및 제도 관련 자문을 위한 「가상자산위원회*(法 §5)」 구성
 - * (위원장) 금융위 부위원장 (위원) 금융위, 기재·법무·과기부 및 민간 9인
 -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가상자산 현물 ETF 승인 및 법인계좌 허용 등 주요 현안 논의 예정('24.10월~)
 - ② (보호재단 설립) 영업 종료·중단 사업자로부터 이용자 자산을 이전받아 반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재단 설립*('24.9.26일)
 - * DAXA 등 업계 자율로 향후 영업종료중단 사업자의 이용자 자산 관리반환 업무 지속 수행
 - ③ (갱신신고 심사) 신고제 시행('21.9월) 후 3년 경과하여 '24.10월 부터 신고 유효기간(3년) 도래 → 차질없이 갱신신고 심사 진행
 - * '21.9월 신고제 시행(특금법 개정) ※ 신고제 강화를 위한 특금법 개정 추진중
 - ④ (불공정조사) 시장 이상거래 징후 및 불공정거래행위 여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취약부문 집중 조사 및 엄중 제재

향후 계획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차질없는 안착에 우선 집중하면서 갱신신고 등 현안대응 및 추가 제도개선 방안 검토 지속
- 시장상황, 글로벌 동향 등을 보아가며, 사업자 영업행위규제 등 2단계 입법을 점진적·단계적 검토*
 - * (예) 사업자 영업행위·진입규제, 법정협회 설립 → 발행·공시·상장규제 등

IV. 실물경제 지원 역할 강화

1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현황 및 추진실적

- 코로나 위기 이후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 지속·가중
 - 고물가·고금리 현상이 지속되면서 매출 부진, 원가 상승, 금융비용 증가 등 경영에 어려움
 - 상대적으로 취약한 영세사업자, 생계형 업종(도소매·음식 등) 중심으로 상환능력이 저하되면서 연체율 상승 및 휴폐업 증가
- 기재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마련(24.7.3일 발표)
 - 소상공인분들이 정책자금을 장기간 나누어 상환할 수 있도록 대출 구조 개선을 지원
 - * 정책자금 상환연장 요건 완화(업력 폐지 등) 및 가산금리 개선(기존 이용금리 기준), 상환기간 연장(최대 5년)을 위한 5조원 규모의 지역신보 전환보증 신설 등(중기부)
 - 취약차주들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30 → 40조원) 등 과감한 채무조정과 함께 취업·재창업을 연계하여 재기를 뒷받침
 - * ①지원대상 사업영위기간 확대 : '20.4~'23.11월 → '20.4~'24.6월
 - ②신청기간 연장 : ~'25.10월 → ~'26.12월
 - ③폐업 후 취업·재창업 교육 이수시 원금감면율 최대 10%p 상향
 - ④교육 이수 후 취업·재창업한 경우 공공정보 등록 즉시 해제 (현재는 1년 유지)

향후 계획

-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필요시 추가적인 보완 방안 마련

2

서민금융 안정적 공급

현황 및 추진실적

□ 최근 고금리, 고물가 상황의 지속에 따라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애로가 가중되고 상환능력도 저하

○ 이에 따라 채무조정 수요, 불법사금융 피해*도 지속 증가

* 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만건) : ('22)13.8 → ('23)18.5 → ('24.6월)9.6

②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만건) : ('22)1.0 → ('23)1.3 → ('24.6월)0.7

□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자금지원 확대, 재기 지원 등의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추진 중

①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층의 자금애로 완화를 위해 정책서민금융을 안정적으로 공급

*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 발표('24.10.2일) : ①정책서민금융 상환유예, 장기분할상환 등 상환부담 완화, ②청년층 대상 2%대 저금리 자금지원 등

②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는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부담을 경감하고, 기초수급자 등 취약층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 강화

*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 대상 소액채무 면제, 취약층 대상 선제적 채무조정 지원(연체 30일 이하의 경우에도 원금감면) 강화('24.10.2일,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

③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근본적인 경제적 자활을 지원

* 서민금융센터 및 모바일(「서민금융 잇다」, '24.6월 출시)을 통해 이용자에게 금융뿐 아니라, 고용·복지·법률 서비스 등 서민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

향후 계획

□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재원 마련 노력을 지속

* 서민금융 예산 반영, 개정 서민금융법(은행권 출연요율 하한 설정) 시행 준비(~'25.1분기) 등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24.10월)으로 금융권 채무조정 활성화

* 법률내용 :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이자 완화, 추심부담 완화 등

3 반도체, AI 등 첨단산업 지원

현황 및 추진실적

-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은 우리경제의 주력산업으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적극적 지원이 필요

※ 미국·일본·대만 등 주요국도 첨단전략산업에 보조금·세제혜택·금융 등 전방위 지원

- 관계부처,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협의체*를 통해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지속 발표

* 은행장 간담회, 경제관계장관회의, 정책금융지원협의회 등

- ① '맞춤형 기업금융지원방안'을 통해 신산업·혁신성장 및 첨단 산업에 26조원 지원방안 마련('24.2.15일)

- 산은은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산업에 저리대출 지원, 시중은행은 신성장 진출 중견기업 전용 저리대출 프로그램 운영

- ②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 발표(18.1조원/'24.6.26일)

- 17조원 규모 반도체 등 첨단산업 저리대출 프로그램 신설

- 기존 3천억원 규모의 반도체생태계펀드를 1.1조원 규모로 확대

- ③ AI 소분야 지원 위해 3.5조원 정책금융 프로그램* 신설('24.7.4일)

* 3조원 규모의 저리대출 프로그램(0.8~1.2%p 우대금리), 0.5조원 펀드프로그램

향후 계획

- 기 마련한 정책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관계부처 합동 정책금융지원협의회 등을 통해 산업현장 금융수요에 적시 대응

※ 우리경제의 미래성장동력 확보 지원을 위해 산은의 수권자본금을 (現) 30조원 → (改) 50조원으로 확대 추진 (산은법 개정)

Ⅲ. 2023년도 국정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목 차

1. 저소득·저신용자들이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상품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혜택의 범위, 자격 조건의 범위를 넓히는 것을 검토할 것 31
2. 소액생계비대출의 재원마련에 간접적인 금융권의 지원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재정 역시 포함될 수 있도록 예산안 편성시 기획재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할 것 32
3. 청년·고령자 및 자영업자 등 중저신용자들의 부채관리를 위하여 유관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맞춤형 정책을 마련할 것 32
4. 소액생계비대출을 받은 경우 신용점수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34
5.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추가적인 대출 증가나 상환유예에 집중하기보다는 소득
창출 정책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검토할 것 34
6.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35
7. 대출절벽으로 중·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에 의존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검토할 것 36
8. 저신용자들의 불법사금융 이용 증가와 불법사금융의 높은 이자 추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38
9. 시중은행 위탁보증으로 공급한 소상공인 신용공급이 높은 변동금리로
지원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39
10. 가계대출 규모를 지속적으로 축소시킬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할 것 40
11. 영세·취약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을 위한 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민원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 41
12. 정부의 정책금융이 저소득·저신용자들에게 타겟팅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43

13.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정책과 관련하여 서민금융정책의 공급규모 확대를 검토할 것	43
14.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취급을 독려하기 위해 제도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예: 신예대출 가중치 조정)에 대해 검토할 것	44
15.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 및 서민 고금리 문제 해결 목표와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을 위한 효율적인 자금공급 정책이 균형을 맞춰 추진될 수 있도록 단기 및 중장기 금융정책을 심도있게 고민하여 마련할 것	44
16. 은행의 경쟁체제 촉진을 위하여 은행산업 신규 사업자 진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	45
17. 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불합리한 내용을 살피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	46
18. 개인사업자 대출이 담보대출보다는 신용대출로 많이 이어질 수 있도록 신용평가 모델 개발 등의 노력을 기울일 것	46
19. 한국은행의 저리 금융중개지원대출이 실질적인 은행권 대출금리 절감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은행권의 관련 대출 상황을 점검할 것	46
20. 대환대출 등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금융서비스가 확산될 수 있도록 은행들의 참여를 독려할 것	47
2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 혁신금융, 대안금융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연체율 관리 등 전반적인 제도를 정비할 것	47
22. 손실 위험 있는 해외부동산펀드의 리파이낸싱펀드 마련 등 자산운용사 혹은 판매법인과의 협력 방안에 대해 업계와 논의할 것	49
23. 상장사 발행 전환사채의 투명성 제고 및 시장 공정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49
24. CP(기업어음) 발행의 만기를 1년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49

25. 양도제한조건부주식도 스톡옵션과 동일하게 정보의 공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50
26. 불투명한 거래를 방지할 수 있도록 TRS제도의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50
27. ATS의 거래상품을 ETF 등으로 확대하고, 공개매수 의무 등과 관련한 제도적 미비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50
28. 하림지주에 대한 지정유예 결정 배경과 코스닥시장 지정유예 관련 심의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51
29.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제재 다양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 ..	51
30.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P2P금융의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대한 관리대책을 마련할 것	51
31.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가 부정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 ..	52
32. 공·사보험 정책 협의를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와 실손보험 관계를 확실히 정립하고 공정한 보험설계 기준을 세울 것	53
33. 실손보험 혜택의 적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험사가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분 확정 이후에 비로소 보험금을 지급하여 실제 의료비 지출과 보험금 수령 시점 간의 시차가 발생하는 제도를 개선할 것	53
34. 외국인의 실손의료보험 현황을 파악하고 이로 인한 보험 손해 방지를 위해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	53
35. 보험사가 확대전손으로 잔존물 대위를 실행한 이후, 사고차량(잔존물)을 바로 매입 업체의 명의로 미등록 전매하는 행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54
36. 신용보험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부분을 검토할 것	54
37. 보험금 부담 완화 방안으로 자동차 사고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 공학적 분석결과를 활용하는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54

- 38. 보험사의 자회사가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관련 내용을 공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55
- 39. 간편결제 수수료와 카드결제 수수료의 차이를 살피고 수수료가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55
- 40. 간편결제 시스템의 수수료가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점검할 것 · 56
- 41. 다운사이징 VAN의 혜택이 대형가맹점에게만 집중되는 문제에 대해
점검할 것 56
- 42. 지방은행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적절히 수행되지 않고 있는 사례들이 있어,
지방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적절한 기준을 가지고
신중하게 진행할 것 57
- 43. 횡령 등 내부 직원에 의한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은행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과 기준의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를 관리할 의무를
법제도적으로 마련할 것 57
- 44. 금융권의 과도한 이자수익과 지배구조 문제가 실효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 58
- 45. 상품 취급과 관련하여 증권사의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할 것 58
- 46.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입법 노력을
기울일 것 59
- 47. 은행 및 증권사 최대주주의 주식처분명령권 제도 도입에 대해 검토할 것 59
- 48. 여신전문회사 임직원의 배임 및 횡령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59
- 49. 금융위원회 퇴직자들이 금융권에 진출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이해충돌
문제를 방지할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할 것 60
- 50. 공매도 전산화 도입 가능성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전문가 외 투자자들도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할 것 60

51. 불법 공매도에 대해 신속하고 강력한 처벌조치를 할 것	61
52. 단기간의 공매도 중단 동안 공정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자본시장법 개정방향을 검토할 것	62
53. 가상자산 실태조사 및 현장조사 계획안을 수립하고 인허가 이후의 관리감독체계를 정비할 것	63
54. 인터넷은행의 가상자산거래소 예치금 총량 제한 제도에 대해 검토할 것 ·	63
55. 국내 가상자산시장에서 법인·기관 투자자에 실명계정을 발급하여 가상자산 거래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64
56. 가상자산을 활용한 사기행위를 유사수신행위에 포함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것	64
57. 가상자산거래소에서의 잦은 상장폐지에 따른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당국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65
58. 현장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불법 추심과 과잉 추심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65
59.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	66
60. 시세조종 부당이득 환수를 위해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근거 법령으로서 시행령을 마련할 것	67
61. 쪼개기 대출과 주택의 공동담보를 활용한 전세사기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67
62. 모바일을 활용한 피싱을 예방하는 정책을 점검 및 개선할 것	68
63. 통장협박형 신종사기에 대한 조속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68
64. 신종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해 금융사 간 악성앱 관련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악성앱 차단시스템을 확충하도록 할 것	68
65.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을 민간 부실채권 전문투자회사에 매각하는 제도에 대해 재검토할 것	69

66.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업에 대한 부가조건 완화 등 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69
67.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70
68.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 시 특허침해 등을 고려하는 기준을 마련할 것	70
69. 혁신금융서비스 수요조사 절차 관련하여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	71
70. 산업은행의 부산이전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조 등 내부직원과의 적극적인 협의에 노력을 기울이고 이주대책 마련을 포함한 행정절차 마무리를 노력할 것	71
71. 전북특별자치도에서의 금융전문 인력 양성 특례 제도에 대해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72
72. 새마을금고 부실문제에 대해 금융 체계 자체의 전반적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금융위원회가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것	72
73. 국부펀드의 해외투자 시 국내운용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소관 부처 및 기관들과 협의할 것	72
74. 5년간 금융민원 평균 처리기간이 약 3배가 늘어난 문제에 대해 관련 협회의 협조를 받아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73
75. 금융회사와 달리 일반기업은 PF협의체에서 규율되는 제재를 받지 않는 제도의 공백을 보완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부동산PF 문제에 대해 협의하고 PF 재구조화 부분에 대해 검토할 것	73
76. 자사의 부실채권을 매수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는 구속성 판매(이른바 '찍기' 영업) 사례에 대해 조사할 것	73
77.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자산운용 중심 특화도시 마련 연구용역에 금융당국이 협조할 것	74
78. MG 손해보험 매각 유찰과 관련하여 공적자금 축소 및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금융지주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74

- 79. 다양한 종목의 손해사정사 자격을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74
- 80. 은행권의 점포 축소 규제를 증권사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75
- 81.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지 금융윤리교육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것 75
- 82. 민생채무 희망플러스 상담센터 최종 운영 보고서를 분석하고 서민을 위한
대책을 검토하여 보고할 것 75
- 83. 가계차주 DSR 현황 자료를 금융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하게끔 할 것 76
- 84. 금융결제원의 안면인식 공동시스템 사업을 최소화하여 시장원리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안면인식 데이터의 활용이 기본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 76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1. 저소득·저신용자들이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상품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혜택의 범위, 자격 조건의 범위를 넓히는 것을 검토할 것</p>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정책서민금융상품의 대출한도 증액 조치 연장(~'24.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햇살론(1.5천만원 → 2천만원), 햇살론뱅크(2천만원 → 2.5천만원), 햇살론15(1.4천만원 → 2천만원) <input type="checkbox"/> 취약계층 중에서 보다 어려운 저소득·저신용자를 지원하기 위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소액생계비대출 출시·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평점 하위 10% 최저신용자 대상의 최저신용자특례보증 공급('23년 2,924억원) ○ 현재 연체중이더라도 대출이 가능한 소액생계비대출 공급('23년 958억원) <p><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대출한도 증액조치(~'24.12월)에 따른 정책서민금융상품 지속 공급 <input type="checkbox"/> '24년에도 보다 힘든 취약계층을 위해 최저신용자특례보증, 소액생계비대출을 지속 공급 중 <input type="checkbox"/> 금융지원뿐 아니라 고용·복지·채무 조정 등 복합상담 서비스를 연계하여 경제적 자활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민금융제도(금융위)와 고용제도(고용부) 간 연계 강화 등 추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2. 소액생계비대출의 재원마련에 간접적인 금융권의 지원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재정 역시 포함될 수 있도록 예산안 편성시 기획재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p>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년에도 1,000억원 지원을 목표로 소액생계비대출을 공급하고 있으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년 예산반영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적극 협의한 바 있음. ○ '25년에도 공급이 이어질 수 있도록 재원마련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 <p><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포함하여 향후에도 재원마련 노력을 지속할 예정
<p>3. 청년·고령자 및 자영업자 등 중저신용자들의 부채관리를 위하여 유관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맞춤형 정책을 마련할 것</p>	<p>< 처리결과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동안 청년·고령자 및 자영업자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 추진 <p>[자영업자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코로나19 이후 정상적인 영업을 지원하기 위해 2년간('22.7월~'24.7월) 총 41.2조원의 자금 공급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3월말 기준 총 40.7조원 공급 (목표 대비 98.6% 달성) ② 소상공인 이자 환급('24.3월~, 매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 자체재원으로 1.5조원(추가적으로 0.6조원 상생지원), 정부 재정으로 중소기업융업권 차주에 0.3조원 환급 ③ 새출발기금 제도개선('24.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업자 지원강화) 중소기업부 및 고용노동부의 취업·재창업 교육이수 부실·폐업자 감면율 최대 10%p 우대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대상 확대) '24년 예산안 부대의견에 따라 코로나 피해 입증요건을 완화하여 '20.4월 ~'24.6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로 확대</p> <p>* (신청기간연장) ~'26.12월까지 신청기한 연장</p> <p>④ 저금리 대환 금리부담 경감('24.3월)</p> <p>* 7%이상의 고금리를 최대5.5%의 저금리로 대환</p> <p>** 1년간 비용부담경감(금리△0.5%p, 보증료율△0.7%p)</p> <p>⑤ 관계부처 합동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 발표('24.7월)</p> <p>[청년 관련]</p> <p>⑥ 신혼부부·신생아 가구에 대한 보금자리론 금리 혜택 확대('24.1월)</p> <p>* (우대금리) 신혼부부 △20bp, 신생아 △10bp(신설) (우대금리 최대 인하폭) △80bp → △100bp로 확대</p> <p>[고령자 관련]</p> <p>⑦ 주택연금에 대한 실거주 사유 예외 확대 및 우대형 주택연금 요건 확대('24.6월~)</p> <p>* (실거주 예외 확대) 병원, 요양시설, 노인복지시설 이주 등 허용 → 실버타운 추가</p> <p>* (우대형) 2억원 → 2.5억원 (既발표)</p> <p>< 향후 추진계획 ></p> <p>□ 취약부문의 부채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일자리를 통한 소득 창출 등 상환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한 만큼,</p> <p>○ 기재부, 중기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상환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속 추진하겠음</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4. 소액생계비대출을 받은 경우 신용 점수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p>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액생계비 대출 신청시 신용점수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차주에게 안내하고 있으며, ○ 소액생계비 대출시 신용평점 영향 등을 모니터링하고 신용평가 관련 신용정보법 준수여부 등을 관리·감독
<p>5.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추가적인 대출 증가나 상환유예에 집중하기 보다는 소득 창출 정책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검토할 것</p>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민들의 부채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추가적인 금융공급 보다는 일자리를 통한 소득 창출등 상환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한 만큼, ○ 기재부, 중기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상환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속 추진 중 □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24.7.3.), 등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24.1.24.),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24.6.27.) 등 서민·취약계층 자립을 위한 지원 방안*도 차질없이 추진 * 고용지원제도 연계 대상 확대, 복합지원 서비스 접근성 제고 등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6.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p>	<p>< 처리결과 ></p> <p>□ 그동안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부담 경감 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p> <p>① 코로나19 이후 정상적인 영업을 지원하기 위해 2년간('22.7월~24.7월) 총 41.2조원의 자금 공급 추진</p> <p>* '24.3월말 기준 총 40.7조원 공급 (목표 대비 98.6% 달성)</p> <p>② 소상공인 이자 환급('24.3월~, 매분기)</p> <p>* 은행 자체재원으로 1.5조원(추가적으로 0.6조원 상생지원), 정부 재정으로 중소기업융업권 차주에 0.3조원 환급</p> <p>③ 새출발기금 제도개선('24.9월)</p> <p>* (폐업자 지원강화) 중소기업부 및 고용노동부의 취업·재창업 교육이수 부실·폐업자 감면율 최대 10%p 우대</p> <p>* (대상 확대) '24년 예산안 부대의견에 따라 코로나 피해 입증요건을 완화하여 '20.4월~'24.6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로 확대</p> <p>* (신청기간연장) ~'26.12월까지 신청기한 연장</p> <p>④ 저금리 대환 금리부담 경감('24.3월)</p> <p>* 7%이상의 고금리를 최대5.5%의 저금리로 대환</p> <p>** 1년간 비용부담경감(금리△0.5%p, 보증료율△0.7%p)</p> <p>⑤ 관계부처 합동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 발표('24.7월)</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비 수요 확대 등을 통한 상환능력 제고가 필요한 만큼, ○ 기재부, 중기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상환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속 추진하겠음 ○ 이와 함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금융 이용이 어려운 차주에 대해서는 정책서민금융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나가겠음
<p>7. 대출절벽으로 중·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에 의존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검토할 것</p>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계층의 금융애로 완화를 위해 '23년 중 정책서민금융을 10.6조원 공급 * 최저신용자특례보증·소액생계비대출 등 □ 우수대부업자의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대부업감독 규정」 개정*('24.6.12일 개정완료) * 저신용층 신용공급 확대를 전제로 우수대부업자 지정취소 유예(최대 2회) 근거마련 등 □ 불법 채권추심 등으로부터 서민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채무자 대리인 무료지원사업” 운영 중* * 채무자대리인 선임실적(건) : ('20) 893 → ('21) 4,747 → ('22) 4,473 → ('23) 3,236 → ('24.上) 1,282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24년도는 역대 최대규모의 예산(12.55억) 편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과잉추심 등으로부터 서민·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채무자보호법 제정('23.12월) ○ 시행령, 감독규정을 마련하여 제정 절차 진행중 □ 반사회적 불법채권추심을 전제로 한 대부계약 무효화 등 “불법사금융 근절과 대부업 신뢰제고를 위한 대부업 제도개선방안” 발표 ('24.9.11일) <p>* 1)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근거마련 2)불법사금융 범죄 처벌 강화 3)대부업·대부중개사이트 등록요건 등 강화 4)대부업 퇴출·재진입 제한강화 등</p> <p><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사금융 근절과 대부업 신뢰제고를 위한 대부업 제도개선방안” 입법 노력 지속('24.9.23일, 강민국의원안 기발의) □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등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불법사금융에 지속 대응 □ 불법과잉추심로부터 서민·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채무자보호법을 차질 없이 시행('24.10.17.)할 계획 □ '24년에도 정책서민금융을 10조원 수준 공급 추진 <p>* 공급규모 : ('22) 9.8 (23) 10.6 (24) 10.4(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지원 뿐 아니라, 고용·복지 채무 조정 등 복합상담을 지원·연계하여 경제적 자활을 지원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8. 저신용자들의 불법사금융 이용 증가와 불법사금융의 높은 이자 추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p>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등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해 범정부 차원에서 불법사금융 대응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감원·경찰·국세청 등과 협업하여 범죄자 단속·검거, 세무조사·추징 등을 지원 □ 취약계층특화상품* 등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하고,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제정('23.12.)하여 채무자 권익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저신용자특례보증·소액생계비대출 등 ** '23년 중 10.6조원 공급 □ 불법 채권추심 등으로부터 서민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채무자 대리인 무료지원사업” 운영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무자대리인 선임실적(건) : ('20) 893 → ('21) 4,747 → ('22) 4,473 → ('23) 3,236 → ('24.上) 1,282 * 24년도는 역대 최대규모의 예산(12.55억) 편성 □ 반사회적 불법채권추심을 전제로 한 대부계약 무효화 등 “불법사금융 근절과 대부업 신뢰제고를 위한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 발표 ('24.9.1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근거마련, 2)불법사금융 범죄 처벌 강화 3)대부업·대부중개사이트 등록요건 등 강화 4)대부업 퇴출·재진입 제한강화 등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사금융 근절과 대부업 신뢰제고를 위한 대부업 제도개선방안” 입법 노력 지속(‘24.9.23일, 강민국의원안 기발의) □ 불법과잉추심로부터 서민·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채무자보호법을 차질 없이 시행(‘24.10.17.)할 계획 □ ‘24년에도 정책서민금융을 10조원 수준 공급 추진 * 공급규모 : (’22) 9.8 (23) 10.6 (24) 10.4(계획) □ 보다 많은 불법사금융·불법추심 피해 지원을 위해 채무자대리 사업을 지속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 □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등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불법사금융·불법채권추심에 지속 대응
<p>9. 시중은행 위탁보증으로 공급한 소상공인 신용공급이 높은 변동금리로 지원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p>	<p>< 처리결과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방안* 마련 및 시행 <p>* ① 은행권 소상공인 이자환급(1.5조원, 약 188만명) 등 민생금융지원(총 2.1조원) ② 중소기업권 소상공인 이자환급 (0.3조원, 약 40만명) ③ 저금리 대한 프로그램 확대 개편 (대상확대 : ‘22.5월말 이전 취급분 → ‘23.5월말 이전 취급분 금리인하 : 5.5% → 5%, 보증료 0.7% 면제)</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10. 가계대출 규모를 지속적으로 축소시킬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할 것</p>	<p>< 처리결과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년연속 감소하는 등 안정적으로 관리중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 (’21)98.7 (’22)97.3 (’23)93.6 (’24.2Q) 92.2 □ “상환능력 내 대출관행” 확립을 위한 DSR 내실화 및 가계부채 질적개선 추진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여 대출한도를 산정하는 스트레스 DSR 시행 (’24.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권 → 2금융권으로 적용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 중 ○ 금융권 주담대 구조개선 新 행정지도 시행(’24.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할상환·고정금리 확대 유도 ○ 커버드 본드* 활성화 방안 발표(’24.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고정금리 모기지와 연계하여 상대적으로 저리로 장기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수단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민·취약차주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DSR 내실화 지속 추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11. 영세·취약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을 위한 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민원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p>	<p><처리결과></p> <p>□ 그동안 간담회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부담 경감 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p> <p>① 코로나19 이후 정상적인 영업을 지원하기 위해 2년간('22.7월~24.7월) 총 41.2조원의 자금 공급 추진</p> <p>* '24.3월말 기준 총 40.7조원 공급 (목표 대비 98.6% 달성)</p> <p>② 소상공인 이자 환급('24.3월)</p> <p>* 은행 자체재원으로 1.5조원(추가적으로 0.6조원 상생지원), 정부 재정으로 중소기업은행 차주에 0.3조원 환급</p> <p>③ 새출발기금 제도개선('24.9월)</p> <p>* (폐업자 지원강화) 중소기업부 및 고용노동부의 취업·재창업 교육이수 부실·폐업자 감면을 최대 10%p 우대</p> <p>* (대상 확대) '24년 예산안 부대의견에 따라 코로나 피해 입증요건을 완화하여 '20.4월~'24.6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로 확대</p> <p>* (신청기간연장) ~'26.12월까지 신청기한 연장</p> <p>④ 저금리 대환 금리부담 경감('24.3월)</p> <p>* 7%이상의 고금리를 최대5.5%의 저금리로 대환</p> <p>** 1년간 비용부담경감(금리△0.5%p, 보증료율△0.7%p)</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data-bbox="794 275 1433 376">⑤ 관계부처 합동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 발표(‘24.7월)</p> <p data-bbox="767 479 1070 517"><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ata-bbox="775 600 1453 815">□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비 수요 확대 등을 통한 상환능력 제고가 필요한 만큼, <li data-bbox="799 871 1453 1028">○ 기재부, 중기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상환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속 추진하겠음 <li data-bbox="799 1084 1453 1364">○ 이와 함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금융 이용이 어려운 차주에 대해서는 정책서민금융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나가겠음 <li data-bbox="775 1420 1453 1700">□ 한편, 국민신문고 운영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월별 민원처리 점검, 담당 직원교육, 관계 기관과의 협조 강화 등을 통해 민원 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12. 정부의 정책금융이 저소득·저신용자들에게 타겟팅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p>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계층 중에서도 보다 어려운 저소득·저신용자 대상의 정책서민금융상품 출시·운영 ○ 신용평점 하위 10% 최저신용자 대상의 최저신용자특례보증 공급('23년 2,924억원) ○ 현재 연체중이더라도 대출이 가능한 소액생계비대출 공급('23년 958억원) <p><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년에도 정책서민금융을 10조원 수준의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며, * 공급규모 : ('22) 9.8 (23) 10.6 (24) 10.4(계획) ○ 향후에도 저소득·저신용자의 금융애로 완화를 위해 최저신용자특례보증, 소액생계비대출도 지속 공급할 예정
<p>13.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정책과 관련하여 서민금융정책의 공급규모 확대를 검토할 것</p>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계층의 금융애로 완화를 위해 '23년 하반기 정책서민금융을 확대하여 10.6조원 공급 <p><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년에도 정책서민금융을 10조원 수준의 공급을 추진 * 공급규모 : ('22) 9.8 (23) 10.6 (24) 10.4(계획)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14.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취급을 독려하기 위해 제도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예: 신예대출 가중치 조정)에 대해 검토할 것</p>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권의 중·저신용자 대출 취급을 유도하기 위해 “중·저신용자 대출 수준”을 금융감독원의 은행권 경영 실태평가 항목에 반영 ○ ‘사회적 책임 이행 실태’ 항목에서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대출잔액 증감률 등을 점검 <p>※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를 위한 예대출 조정 방안의 경우, 중·저신용자 대출은 신용위험이 비교적 큰 만큼 예대출 완화에 따른 건전성 리스크를 감안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p>
<p>15.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 및 서민 고금리 문제 해결 목표와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을 위한 효율적인 자금공급 정책이 균형을 맞춰 추진될 수 있도록 단기 및 중장기 금융정책을 심도있게 고민하여 마련할 것 (금정)</p>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정된 자금으로 서민들의 고금리 등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신성장 분야의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자금공급이 균형있게 추진될 필요 □ 이를 위해 가계부문에 자금공급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DSR 내실화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민들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정책서민금융을 안정적으로 공급 ○ 이와 함께,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수출금융 지원방안(‘23.8월),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24.2월) 등 다양한 자금지원 방안을 추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향후에도 자금이 성장성이 높고, 서민들의 금융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분야에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 ○ 가계대출이 과도하게 증가하여 우리 경제에 부담요인이 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 서민들의 금리부담 경감을 위한 서민금융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 시장 수요를 반영한 정책금융 공급을 통해 우리경제의 성장동력 확충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음 <p><input type="checkbox"/> 이 과정에서 단기, 중장기 금융정책 수립시 균형감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p>
<p>16. 은행의 경쟁체제 촉진을 위하여 은행산업 신규 사업자 진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p>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정부는 신규플레이어 진입을 통해 은행권 경쟁을 촉진하겠다고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방안('23.7.5일) <input type="checkbox"/> 최근 대구·경북권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 인가('24.5.16일) <p><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심사기준 발표 ('24.11월 예정)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17. 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의 불합리한 내용을 살피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p>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대출금 중도상환 시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가능토록 「금소법감독규정」 개정완료 (‘24.7.10일 금융위 의결)</p> <p>* ①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②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25.1.13일, 관련 「금소법감독규정」 개정안 시행 예정</p>
<p>18. 개인사업자 대출이 담보대출보다는 신용대출로 많이 이어질 수 있도록 신용평가 모델 개발 등의 노력을 기울일 것</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은행이 보다 많은 정보를 활용하여 신용평가를 정교하게 할 수 있도록 은행이 신용평가에 소비자의 다양한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방안 등을 검토*</p> <p>* 예: 은행권 업무위탁 관련 제도개선 TF 운영 (~’23.11월) 등을 통해 핀테크 등 IT기업에의 신용평가 업무위탁 가능성 검토</p>
<p>19. 한국은행의 저리 금융중개지원 대출이 실질적인 은행권 대출 금리 절감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은행권의 관련 대출 상황을 점검할 것</p>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한국은행이 금융중개지원대출을 받은 은행의 여신금리 감면폭을 수시로 점검중(대출 신청시 확인 및 연 1~2회 정기검사 실시)</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20. 대환대출 등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금융서비스가 확산될 수 있도록 은행들의 참여를 독려할 것</p>	<p><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권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23.5월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 이어 '24.1월부터는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며, ○ 9.20일 누적 기준, 약 27만명의 이용자가 15조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균 금리하락폭 1.52%p, 1인당 연간기준 이자절감액 180만원 □ '24.9월 중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 빌라 담보대출도 갈아타기 서비스 대상에 포함하는 등 대환대출 인프라 확장을 지속 추진중 □ 은행권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이용 편의성 개선을 위해 자체적으로 개선방안을 모색·추진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KB은행은 시세 조회가 가능한 오피스텔·빌라 확대를 위해 기존 시세 서비스 외 자동가치산정 모형(AVM)을 활용한 시세 서비스도 개시('24.8~)
<p>2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 혁신금융, 대안금융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연체율 관리 등 전반적인 제도를 정비할 것</p>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체율 관리 관련 금융당국은 온투업자의 '투자자 정보제공'* 여부 및 '연체율 관리 방안**' 이행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 연체율 15% 초과시 연체발생사실, 계약내용 등에 대한 공시 의무(감독규정 §8①)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연체율 20% 초과시 건전성 개선을 위한 ‘연체율 관리방안’ 마련 의무(감독규정 §12②)</p> <p>○ ‘23년 하반기부터 P2P금융을 이용하는 일반 개인투자자가 연계투자 시 알아야할 핵심사항을 ‘투자적합성 테스트’를 통해 확인토록 함</p> <p>□ 또한, ‘24.1월 온투업권 전반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규제개선방안」 발표함*</p> <p>* ① (투자자 모집 위탁 허용) 금융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에서 연계투자상품의 비교·추천이 가능하도록 규제특례 허용</p> <p>② (투자 한도 확대) 개인투자자가 사회기반 시설(재생에너지 등) 사업에 투자시 투자 한도를 최대 3천만원(기존 5백만원)으로 확대</p> <p>③ (기관투자 허용) 금융회사(저축은행 등)의 P2P금융 연계투자가 가능하도록 심사·채권 관리 등 업권법 적용과 관련해 규제특례 허용</p> <p>④ (공시기간 합리화) 자산담보 연계투자 상품의 공시기간 축소(24→1시간)로 적기 대출집행이 가능하도록 함</p> <p><향후 추진계획></p> <p>□ 금융당국은 온투업자의 부실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점검하고, 연체율 관리가 필요한 업체를 대상으로 안정적인 상품을 취급하도록 지도할 예정</p> <p>□ 또한, 기 발표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규제개선방안」을 충실히 이행할 예정</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22. 손실 위험 있는 해외부동산펀드의 리파이낸싱펀드 마련 등 자산운용사 혹은 판매법인과의 협력 방안에 대해 업계와 논의할 것</p>	<p><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공모 해외부동산펀드의 손실 우려에 대해서는 만기연장·자산매각 등으로 자산운용사가 대응 중에 있음</p>
<p>23. 상장사 발행 전환사채의 투명성 제고 및 시장 공정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p>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전환사채 제도개선 방안* 발표(24.1.월) 후 관련 규정 개정 추진중</p> <p>* 콜옵션 양도시 대기수수 여부 등 공시의무 부여, 만기 전 취득 CB에 대한 공시 강화 등</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CB 불공정거래 조사강화 등 엄정 대응 계획</p>
<p>24. CP(기업어음) 발행의 만기를 1년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CP는 신속한 자금조달 등의 장점이 있어 기업 등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되는 상황</p> <p>○ 다만, 회사채보다 완화된 발행절차가 등이 적용되어 규제차익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일부 존재</p> <p><input type="checkbox"/> 따라서, 자금시장에 대한 영향 및 완화된 발행절차 등으로 인한 우려 등을 모두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만기가 1년 이상인 CP 관련 제도개선 필요성 및 방안을 검토할 필요</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25. 양도제한조건부주식도 스톡옵션과 동일하게 정보의 공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p>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23.12월 기업의 양도제한조건주식(RSU) 등 주식기준보상 관련 정보가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기업공시서식을 개정 * 기업은 RSU 등 주식기준보상에 대해서도 주식 총수, 인원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 * 특히 대주주는 개인별로 RSU 부여 현황 등을 공개하여야 함
<p>26. 불투명한 거래를 방지할 수 있도록 TRS제도의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p>	<p><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최근 개선된 공시제도* 운영상황을 보아가며 국내외 제도 현황, 관련 연구 등을 참조하여 개선 필요여부 및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 * TRS 거래의 일종인 차액결제거래와 관련하여 실제 투자자 유형별 거래실적 정보 등 정보제공 및 공시범위를 확대하는 보완장치 시행('23.9월)
<p>27. ATS의 거래상품을 ETF 등으로 확대하고, 공개매수 의무 등과 관련한 제도적 미비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p>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5.9일 ATS운영방안을 既마련·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시간 연장 등 새로운 증권거래 서비스, KRX+ATS 통합 시장관리, 자본시장 제도 정비 <p><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ATS 매매체결대상 상품 확대(상장ETF·ETN), 공개매수 제도 정비(법개정 사항) 등 추진 예정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28. 하림지주에 대한 지정유예 결정 배경과 코스닥시장 지정유예 관련 심의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 할 것</p>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23.10월말 운영덕 의원실에 방문해 지정 유예 결정 배경과, 관련 제도에 대해 보고* 완료</p> <p>*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보고</p>
<p>29.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제재 다양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p>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24.1월 3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새로 도입·시행됨</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불공정거래 등 행위자에 대한 임원 선임 및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 위한 입법적 노력을 지속할 예정</p>
<p>30.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P2P금융의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대한 관리대책을 마련 할 것</p>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연체율 관리 관련 금융당국은 온투업자의 '투자자 정보제공'* 여부 및 '연체율 관리 방안**' 이행을 집중 모니터링하고,</p> <p>* 연체율 15% 초과시 연체발생사실, 계약내용 등에 대한 공시 의무(감독규정 §8①)</p> <p>** 연체율 20% 초과시 건전성 개선을 위한 '연체율 관리방안' 마련 의무(감독규정 §12②)</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23년 하반기부터 P2P금융을 이용하는 일반 개인투자자가 연계투자 시 알아야 할 핵심사항을 ‘투자적합성 테스트’를 통해 확인토록 함</p> <p><향후 추진계획></p> <p>□ 금융당국은 온투업자의 부실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점검하고, 연체율 관리가 필요한 업체를 대상으로 안정적인 상품을 취급하도록 지도할 예정</p>
<p>31.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가 부정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p>	<p><처리결과></p> <p>□ “고속·고빈도 알고리즘 거래” 관련 리스크 관리를 위한 규제방안을 마련하여 ‘23.1월부터 시행·운영중</p> <p>○ (등록제) 고속 알고리즘 거래자의 거래소 사전등록 의무화*</p> <p>* 자전거래방지, 일괄호가취소 등 위험관리 장치도 함께 도입</p> <p>○ (시장감시) 알고리즘 매매에 특화된 불공정거래 시장감시 기준을 마련·운영하여 효과적으로 이상거래 적출</p> <p><향후 추진계획></p> <p>□ 금감원·한국거래소 등과 면밀하게 모니터링 지속</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32. 공·사보험 정책 협의를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와 실손보험 관계를 확실히 정립하고 공정한 보험설계 기준을 세울 것</p>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환급금은 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가 아니므로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서 제외* <p>* '24.1월 대법원 판례 및 실손보험 표준약관</p>
<p>33. 실손보험 혜택의 적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험사가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분 확정 이후에 비로소 보험금을 지급하여 실제 의료비 지출과 보험금 수령 시점 간의 시차가 발생하는 제도를 개선할 것</p>	<p><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공사보험실무협의체('23.12월) 및 관계 기관 TF를 통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先지급한 후 추후 건보공단과 보험사간 환급금을 정산하는 방안 논의 ※ 복지부는 제도 개선을 위해 건강보험법 개정* 추진 입장 <p>* (주요내용) 보험사와 사후 정산 근거 마련 등</p>
<p>34. 외국인의 실손의료보험 현황을 파악하고 이로 인한 보험 손해 방지를 위해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p>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외국인 실손보험 관련 현황을 파악한 후 “외국인 실손보험 인수기준안” 마련 (금감원, '23.12월) * 신분증명, 건강보험가입증명, 건강상태 증명 강화 및 가입한도 차등화 등 <input type="checkbox"/> 인수기준안에 대하여 관계 부처(법무부, 고용부) 및 보험사 안내 완료('24.상반기)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35. 보험사가 확대전손으로 잔존물 대위를 실행한 이후, 사고차량(잔존물)을 바로 매입 업체의 명의로 미등록 전매하는 행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p>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해당 의원실에 문제되는 사안의 법률 위반여부 조사결과* 보고 완료('23.10월) * 보험사는 자동차관리법 소관부처인 국토부 유권해석('12.7월)에 따라 차주가 먼저 전손(全損)차량을 매각하고 나면 차량가액에서 매각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법 위반으로 보기 곤란
<p>36. 신용보험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부분을 검토할 것</p>	<p><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해당(최승재) 의원실에 국감 지적사항 처리상황* 보고('23.10월) * 대출성 상품에 대한 계약 체결시 신용보험 판매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의 예외로 인정하는 금소법 개정안(최승재 위원안) 논의 <input type="checkbox"/> 판매채널 확대를 위하여 온라인 보험 비교추천서비스 플랫폼에서 취급 가능한 상품범위에 신용보험을 포함 * 핀테크사에서 신용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출시 협의 중
<p>37. 보험금 부담 완화 방안으로 자동차 사고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 공학적 분석결과를 활용하는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p>	<p><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경상환자 치료비 과실상계, 진단서 제출 의무화 등) 지속 추진 중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38. 보험사의 자회사가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관련 내용을 공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p>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 자회사 위탁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이사회 보고 및 공시하도록 보험업법 개정 완료 ('24.2월)
<p>39. 간편결제 수수료와 카드결제 수수료의 차이를 살피고 수수료가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p>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편결제 수수료* 중 '결제관련 수수료'는 업계 자율경쟁 촉진을 위해 '23.3월부터 반기별 자율공시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편결제 수수료는 '결제관련 수수료'와 '기타 수수료'로 구분되면, '기타 수수료'는 쇼핑물 입점 및 프로모션 수수료 등 일반 상거래 수수료로서 공정위 소관 사항임 ○ '24.8월까지 총 4차례 공시하였으며, 비교공시를 통한 수수료 하락 효과*도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공시 대비 $\Delta 0.09 \sim \Delta 0.10\%p$, 직전공시 대비 $\Delta 0.01 \sim \Delta 0.03\%p$ <p><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공시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관 협회를 통해 공시 자료의 정확성 확인* 예정('24.하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모델에 따라 결제 수수료의 세부 구성 항목 등이 상이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제3자 확인을 통해 정확성 제고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40. 간편결제 시스템의 수수료율이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점검할 것</p>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편결제 수수료* 중 '결제관련 수수료'는 업계 자율경쟁 촉진을 위해 '23.3월부터 자율공시 중 * 간편결제 수수료는 '결제관련 수수료'와 '기타 수수료'로 구분되면, '기타 수수료'는 쇼핑몰 입점 및 프로모션 수수료 등 일반 상거래 수수료로서 공정위 소관 사항임 ○ '24.8월까지 총 4차례 공시하였으며, 비교공시를 통한 수수료 하락 효과*도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최초공시 대비 $\Delta 0.09 \sim \Delta 0.10\%p$, 직전공시 대비 $\Delta 0.01 \sim \Delta 0.03\%p$ <p><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공시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관 협회를 통해 공시 자료의 정확성 확인* 예정('24.하반기) * 사업모델에 따라 결제 수수료의 세부 구성 항목 등이 상이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제3자 확인을 통해 정확성 제고
<p>41. 다운사이징 VAN의 혜택이 대형 가맹점에게만 집중되는 문제에 대해 점검할 것</p>	<p><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감독원을 통해 다운사이징 VAN 운영현황 등에 대해 현장점검('24.2~3Q) ○ 점검 내용 등을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 등이 있는지 검토할 예정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42. 지방은행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적절히 수행되지 않고 있는 사례들이 있어, 지방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적절한 기준을 가지고 신중하게 진행할 것</p>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시 인가 방식 및 절차 발표('24.1.3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가방식) 은행법 인가규정(제8조)에 따른 인가내용의 변경 방식 (절차) 모든 세부인가요건 심사, 예비인가 생략 가능 등 □ 대구·경북권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24.5.16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가심사 과정에서 금융사고 등을 감안하여 내부통제체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엄격히 심사 <p><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대구은행의 내부통제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면밀히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통제 개선사항의 이행실태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반기별 보고 예정
<p>43. 횡령 등 내부 직원에 의한 금융 사고 방지를 위한 은행의 내부 통제 기준 마련과 기준의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를 관리할 의무를 법제도적으로 마련할 것</p>	<p><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무구조도 도입,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등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지배구조법 개정안 마련, 국회 통과('23.12월) 및 시행 ('24.7월)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44. 금융권의 과도한 이자수익과 지배구조 문제가 실효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p>	<p>< 처리결과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들에게 보다 낮은 비용(금리)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은행권 경쟁을 촉진하고, 은행권 수익구조와 수익활용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방안”(23.7월 발표) 후속조치를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치사례: 온라인 대환대출 플랫폼 서비스 확대(23.12월 주택담보대출 개시 등), 예대금리차공시 확대(23.7.28.) 등 □ 책무구조도 도입,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등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지배구조법 개정안 마련, 국회 통과(23.12월) 및 시행 (24.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한, 금융권의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을 마련·발표(23.12월, 금감원)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를 보아가며 필요 시 추가과제를 발굴해 나갈 계획 □ 금융권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 검토할 계획
<p>45. 상품 취급과 관련하여 증권사의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할 것</p>	<p><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무구조도 도입,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등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지배구조법 개정안 마련, 국회 통과(23.12월) 및 시행 (24.7월)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46.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입법 노력을 기울일 것</p>	<p><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무구조도 도입,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등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지배구조법 개정안 마련, 국회 통과('23.12월) 및 시행 ('24.7월)
<p>47. 은행 및 증권사 최대주주의 주식 처분명령권 제도 도입에 대해 검토할 것</p>	<p><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통제의 실효적인 작동을 유도하기 위해 최대주주의 경각심을 고취하려는 지배구조법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하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회사 내부통제 기준 위반에 따른 금융사고와 관련하여 직접 금융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대주주에게 책임을 물어 주식처분 명령을 부과하는 것은 - 대주주의 책임범위와 관련된 법적 문제, 재산권 침해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 필요
<p>48. 여신전문회사 임직원의 배임 및 횡령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p>	<p><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신전문금융회사 임직원의 횡령 및 배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명시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24.07.31. 강훈식의원안)이 발의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여신전문금융회사, 여신금융협회 임직원에 대한 횡령·배임 금지 조항 및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신설(금투, 저축은행 등은 근거 관련법에 旣 마련)</p> <p>○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필요시 재입법 등 추진</p>
<p>49. 금융위원회 퇴직자들이 금융권에 진출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이해충돌 문제를 방지할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할 것</p>	<p><처리결과></p> <p>□ 현행 「공직자윤리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상 퇴직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철저한 운영 및 안내 지속</p> <p>* ① 모든 퇴직공직자는 재직 중에 직접 처리 하였던 업무에 대하여 퇴직 후 영구히 취급 제한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제1항)</p> <p>②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 기관의 공무원과 임직원에게 부정한 청탁·알선행위 금지(「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4제1항)</p> <p>③ 모든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인 최근 2년 이내 퇴직자와 사적 접촉시 기관장에 신고(「이해충돌방지법」 제15조)</p>
<p>50. 공매도 전산화 도입 가능성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전문가 외 투자자들도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할 것</p>	<p><처리결과></p> <p>□ 유관기관 T/F 검토를 거쳐 제도개선 방향 초안을 마련하고, 공론화 진행</p> <p>○ 유관기관 설명자료 배포('23.11월), 2차례 토론회('23.12월) 및 법안소위 논의('23.12월) 등 의견수렴</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년에는 전문가·유관기관·업계 외에도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2차례 금감원 열린토론 개최(3.13, 4.25) □ 그간의 소통 결과를 종합하여 '24.6월 전산시스템 구축방안을 포함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마련·발표 ○ 기관투자자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및 기관투자자 무차입 공매도를 사후 전수점검할 수 있는 거래소 중앙점검 시스템 구축 추진 중 																					
<p>51. 불법 공매도에 대해 신속하고 강력한 처벌조치를 할 것</p>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인 불법 공매도 제재 강화 노력에 따라 제재 건수 및 수준이 크게 증가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40px;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td> <td>'19</td> <td>'20</td> <td>'21</td> <td>'22</td> <td>'23</td> <td>'24.9</td> </tr> <tr> <td>과태료(억원)</td> <td>4.7</td> <td>7.3</td> <td>8.0</td> <td>24.3</td> <td>11.8</td> <td>1.7</td> </tr> <tr> <td>과징금(억원)</td> <td>-</td> <td>-</td> <td>-</td> <td>-</td> <td>359.0</td> <td>276.8</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제재 도입* ('21.4월 시행) 이후, '23~'24.9월 총 44건, 636억원의 과징금 부과 <p style="margin-left: 40px;">* (개정 전) 과태료 부과만 가능(1억원 이하) (개정 후)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글로벌IB 3개사의 장기간 불법 공매도 주문·수탁에 대해 거액의 과징금 부과* <p style="margin-left: 40px;">* ('23.12월) 2개사(3건), 총 189억원 [수탁증권사 1개사(1건) 과징금 포함시 총 265억원] ('24.7월) 1개사(2건), 총 272억원</p>		'19	'20	'21	'22	'23	'24.9	과태료(억원)	4.7	7.3	8.0	24.3	11.8	1.7	과징금(억원)	-	-	-	-	359.0	276.8
	'19	'20	'21	'22	'23	'24.9																
과태료(억원)	4.7	7.3	8.0	24.3	11.8	1.7																
과징금(억원)	-	-	-	-	359.0	276.8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으로도 불법 공매도에 대해 신속하고 강력한 처벌 조치를 이어나가겠음 ○ 기존 금감원 ‘공매도조사팀’을 ‘공매도특별조사단’(19명, ‘23.11월)으로 확대·개편하여 상시적인 모니터링·조사체계 가동 중 ○ 글로벌IB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결과 발표시 즉각적인 제재조치 예정
<p>52. 단기간의 공매도 중단 동안 공정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자본시장법 개정방향을 검토할 것</p>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관기관 T/F 검토를 거쳐 제도개선 방향 초안을 마련하고, 공론화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관기관 설명자료 배포(‘23.11월), 2차례 토론회(‘23.12월) 및 법안소위원회(‘23.12월) 등 의견수렴 ○ ‘23.12월 자본시장법 개정방향에 대한 정부 의견을 既제출·설명 ○ ‘24년에는 전문가·유관기관·업계 외에도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2차례 금감원 열린토론 개최(3.13, 4.25) □ 그간의 공론화 결과를 종합하여 ‘24.6월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속 자본시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24.9.26)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53. 가상자산 실태조사 및 현장조사 계획안을 수립하고 인허가 이후의 관리감독체계를 정비할 것</p>	<p><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현황을 주기적으로 계속 대외 공개*할 예정 <p>* '23년 상반기, '23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보도자료 발표('23.10.10., '24.5.1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 형성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심사 및 AML 검사를 강화*할 계획 <p>* 금융정보분석원, 2024년도 업무계획 마련('24.2.13, 보도자료)</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①사업자 신고 요건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추진, ②원화마켓진입사업자, 실명계정발급은행 등을 중심으로 AML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철저히 검사(점검)·제재, ③AML위험 및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갱신신고와 변경신고를 종합 심사, 사업자가 영업을 종료할 경우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해 업무처리 절차, 고객 자금반환 등 모니터링 강화</p> </div>
<p>54. 인터넷은행의 가상자산거래소 예치금 총량 제한 제도에 대해 검토할 것</p>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는 가상자산 예치금 규모를 직접 규제하지 않고 유동성 규제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규율 중 ○ 최근 LCR(유동성커버리지비율)* 산정시 가상자산 예치금의 이탈율(유출액)을 40%에서 100%로 조정 <p>* $\frac{\text{고유동성자산 보유 규모}}{\text{향후 30일간 순현금유출액}} \geq 100\%$</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현행 규제운영 성과를 보아가며, 향후 필요 시 규제 개선 검토</p>
<p>55. 국내 가상자산시장에서 법인·기관 투자자에 실명계정을 발급하여 가상자산 거래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p>	<p><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은행은 자금세탁방지 차원에서 자체 위험평가 등을 통해 법인(국가기관, 지자체 포함)에 대해서는 실명계정을 발급하지 않고 있음</p> <p>○ 다만, 범죄수익 환수 등 공익적 목적에 한정하여 소관 부처와 충분한 협의 등을 거쳐 국가·지자체* 등에 예외적으로 발급하고 있음</p> <p>* 예)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검찰 명의 계정 발급, 체납세액 징수를 위한 세무서 명의 계정 발급</p>
<p>56. 가상자산을 활용한 사기행위를 유사수신행위에 포함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것</p>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자가 불특정 다수로부터 가상자산을 조달하는 업을 영위할 경우 유사수신행위로 간주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 완료 (2024. 5. 28. 시행)</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57. 가상자산거래소에서의 잦은 상장 폐지에 따른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당국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p>	<p><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관련 자율협의 기구 등을 통해 공통의 가상자산 상장과 관련한 내부통제와 투명한 절차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중임 <p>*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가 '24.7.19일 법 시행과 함께 쉐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적용중</p>
<p>58. 현장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불법 추심과 과잉 추심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p>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상담 중 불법추심 등 피해 의심 시 채무자대리인 제도 등 안내 □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부당 채권추심행위를 집중 점검*(금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년) 31개 대부업체 중 총 24개업체에 대해 문책 등 조치요구 ('24년) '24.1분기 10개사에 대해 특별점검 □ 불법 채권추심 등으로부터 서민 취약 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채무자 대리인 무료지원사업” 운영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무자대리인 선임실적(건) : ('20) 893 → ('21) 4,747 → ('22) 4,473 → ('23) 3,236 → ('24.上) 1,282 * 24년도는 역대 최대규모의 예산(12.55억) 편성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반사회적 불법채권추심을 전제로 한 대부계약 무효화 등 “불법사금융 근절과 대부업 신뢰제고를 위한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 발표 (‘24.9.11일)</p> <p>* 1)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근거마련, 2)불법사금융 범죄 처벌 강화 3)대부업·대부중개사이트 등록요건 등 강화 4)대부업 퇴출·재진입 제한강화 등</p> <p><향후 추진계획></p> <p>□ “불법사금융 근절과 대부업 신뢰제고를 위한 대부업 제도개선방안” 입법 노력 지속(‘24.9.23일, 강민국의원안 기발의)</p> <p>□ 불법과잉추심로부터 서민·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채무자보호법을 차질 없이 시행(‘24.10.17.)할 계획</p> <p>□ 또한, 보다 많은 불법사금융·불법추심 피해 지원을 위해 채무자대리 사업을 지속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p>
59.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	<p><처리결과></p> <p>□ 국무조정실 주관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통해 다양한 측면에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이행 중</p> <p>* (구성) 국조실, 과기정통부, 문체부, 방통위, 금융위, 금감원, 경찰청, 정부합동수사단, 국정원</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금융·통신분야) 알뜰폰 신분증 스캐너 도입,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시행 ② (단속·검거 노력) 경찰 피싱 전담수사팀 신설, 검찰청 합동수사단 보강 등 ③ (경각심 제고) 미끼문자 수신자 대상 경보문자 발송 등 신종사기 대응
<p>60. 시세조종 부당이득 환수를 위해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근거 법령으로서 시행령을 마련할 것</p>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를 위하여 부당이득금액 구체적 산정방식 등 법률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시행령 개정·시행('24.1) <p><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예정 <p>* 개정 자본시장법 부칙 제2조에 따라 '24.1.19일 이후 발생하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이 부과</p>
<p>61. 쪼개기 대출과 주택의 공동담보를 활용한 전세사기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p>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선순위부채 확인 현황을 점검('23.10~12월) □ 대출시 시세 및 선순위부채 정보를 추적·분석하는 모니터링 체계 구축('24.9월)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62. 모바일을 활용한 피싱을 예방하는 정책을 점검 및 개선할 것</p>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무조정실 주관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에서 모바일을 활용한 피싱 예방 정책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적극 논의 중 ○ 통신·금융부문간 상호 협력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24.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금융 부문의 제도개선 과제 공동 발굴 및 추진, 정보공유체계 구축 등 ○ AI·데이터 기반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24.6.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공공의 AI·데이터 기반 보이스피싱 예방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상호 교류 및 협력
<p>63. 통장협박형 신종사기에 대한 조속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p>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장협박 피해자도 지급정지시 이의제기를 통해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개정·시행('24.8.28)됨
<p>64. 신종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해 금융사 간 악성앱 관련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악성앱 차단 시스템을 확충하도록 할 것</p>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금융보안원에서 보이스피싱 악성 앱 탐지시스템*을 구축·운영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악성앱, 가로채기 전화번호 등을 탐지 ○ 범금융권 보이스피싱 사기정보 공유 시스템을 통해 탐지된 악성 앱 정보 등을 금융회사, 수사기관, 이통사, KISA 등과 공유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 약 2만 8천건의 보이스피싱 사기 정보를 공유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input type="checkbox"/> 앞으로도 정보 공유 및 탐지 체계가 확대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함께 지속 노력할 예정
<p>65.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을 민간 부실채권 전문투자회사에 매각하는 제도에 대해 재검토할 것</p>	<p><처리결과></p> <input type="checkbox"/>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을 민간(유동화 전문회사)에 매각하는 경우, 불법추심 방지를 위하여 유동화전문회사의 재매각을 금지하고, 신정법에 따라 허가받은 채권추심회사에 추심을 위탁하도록 하였음(23.5월) <p>○ 앞으로도 채무자에 대한 불법·과잉 추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음</p>
<p>66.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업에 대한 부가조건 완화 등 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p>	<p><처리결과></p> <input type="checkbox"/>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시장·금융질서의 안정* 등을 위해 부가조건을 부과하고 있음 <p>* 「금융혁신법」 §4③</p> <input type="checkbox"/> 지정 이후 업체가 부가조건 완화 등을 문의하는 경우 지정내용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중 <p>* 지정 기업은 사정변경, 정당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 부가조건의 변경 또는 취소 신청 가능 (「금융혁신법」 §4④, 「행정규제기본법」 §19의3⑦)</p> <p>○ 업체들은 지정내용 변경 절차를 활용하고 있음*</p> <p>* (예) ‘청소년 대상 가족카드 발급’의 경우 지정내용 변경을 통해 건당 결제한도 폐지(월 이용한도는 유지), 이용업종 확대 등 부가조건 완화</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67.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p>	<p><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의 편의성 및 심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편사항을 既 발표*(‘24.5.3일)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조사’ 종료, 정기공고를 통한 신청서 접수, 핀테크지원센터를 통한 컨설팅 제공 등 ○ ‘24년 2분기부터 정기공고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를 접수* 받아 심사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분기) 6.17~28일 동안 총 131건을 접수 (3분기) 9.16~27일간 정기신청 접수중 ○ 접수받은 신청서는 법정 심사기간*(최대 120일) 내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마칠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혁신법」 §14
<p>68.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 시 특허침해 등을 고려하는 기준을 마련할 것</p>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여부는 기본적으로 「금융혁신법」 §13④의 9가지 심사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서비스의 지역, ②서비스의 혁신성, ③소비자 편의, ④규제 특례 적용의 불가피성, ⑤영위자격과 능력, ⑥서비스 업무 방법 및 사업계획, ⑦소비자보호 및 위험관리방안, ⑧금융 시장 및 금융질서 안정성, ⑨금융관련법령의 목적 달성 □ 신청한 서비스와 관련된 특허의 침해가 확정된 경우, ②서비스의 혁신성* 기준 판단시 고려사항으로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울러, 지정 이후라도 특허 침해가 확정된다면 지정 취소도 가능* <p>* 지정시의 심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금융위는 지정 취소 가능(「금융혁신법」 §7)</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69. 혁신금융서비스 수요조사 절차 관련하여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p>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의 편의성 및 심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편사항을 既 발표*(24.5.3일)하였으며, 이에 따라 '수요조사' 종료 <p>* '수요조사' 종료, 정기공고를 통한 신청서 접수, 핀테크지원센터를 통한 컨설팅 제공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희망 업체들은 정기적으로 공고되는 신청 기간에 신청서 제출이 가능하며, ○ 신청서 작성에 도움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핀테크지원센터의 컨설팅 지원 계속
<p>70. 산업은행의 부산이전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조 등 내부 직원과의 적극적인 협의에 노력을 기울이고 이주대책 마련을 포함한 행정절차 마무리를 노력할 것</p>	<p>< 처리결과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은 경영진은 노조에게 주요 이슈 발생시마다 설명회, 간담회 및 수시 면담 등 소통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금융위도 지방시대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지속 협의해왔음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산은법이 통과되는 즉시 산은이 이전계획안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면 즉시 지방시대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조속하게 이전계획안을 승인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71. 전북특별자치도에서의 금융전문인력 양성 특례 제도에 대해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p>	<p><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특별법 전부개정(23.12.26.)에 따라 전북도의 금융전문인력 양성 제도도 시행될 예정(24.12.27.)이며, 지자체 요청시 적극 검토
<p>72. 새마을금고 부실문제에 대해 금융체계 자체의 전반적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금융위원회가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것</p>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안부·금감원·예보 등 관계기관과 새마을금고 건전성 제고노력 지속 추진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2월 금융위·행안부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새마을금고 건전성 기준 개선, 정보 공유 통한 금융당국의 새마을금고 상시 모니터링, 합동 검사 추진 등 ○ '24.4월 관계기관* 합동검사 실시 * 금감원, 예보, 새마을금고중앙회 ○ '24.4월 범부처 협업조직(상호금융팀)* 출범 * 상호금융권의 건전한 발전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금융위, 행안부, 농식품부 참여 ○ '24.5월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 ※ 상호금융권 건전성 제고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 논의 * 금융위(주관), 행안부, 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 등
<p>73. 국부펀드의 해외투자 시 국내운용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소관 부처 및 기관들과 협의할 것</p>	<p>< 처리결과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부펀드의 국내운용사 위탁 확대를 위해 기재부·KIC와 지속협의중 * 기재부-금융위·금투협 회의(24.1.15.), 기재부·KIC-금융위·금투협 회의(24.1.26., 27.)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74. 5년간 금융민원 평균 처리기간이 약 3배가 늘어난 문제에 대해 관련 협회의 협조를 받아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p>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민원 협회 이첩·처리방안 마련('24.8월)하였으며,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후 추진 예정
<p>75. 금융회사와 달리 일반기업은 PF 협의체에서 규율되는 제재를 받지 않는 제도의 공백을 보완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부동산PF 문제에 대해 협의하고 PF 재구조화 부분에 대해 검토할 것</p>	<p>< 처리결과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기관(기재부, 국토부, 금융위 등) 회의를 통해 관련사항 논의('23.1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부 중심으로 업계 애로 및 제도개선 필요사항 의견수렴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사·시공사 간담회('23.11월) 등 □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24.1.10, '24.3.28), 부동산PF 시장 연착륙 지원방안('24.5.13) 등 발표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PF 시장의 연착륙 추진 및 현장애로 개선 노력 지속
<p>76. 자사의 부실채권을 매수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는 구속성 판매(이른바 '꺾기' 영업) 사례에 대해 조사할 것</p>	<p><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회사의 부동산 PF 대출 과정에서 과도한 비용 부과, 꺾기 등 불합리한 관행이 있는지를 지속 점검하고 있으며 문제가 있는 경우 개선해 나가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77.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자산운용 중심 특화도시 마련 연구용역에 금융당국이 협조할 것</p>	<p><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 <p><input type="checkbox"/> 전북도에서 자산운용 중심 특화도시 발전전략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으로 지자체 요청시 연구과정에 협조</p> <p>* 전북 금융허브 발전 전략 및 마스터플랜(안) 연구용역 진행 중('23.11월~'24.10월)</p>
<p>78. MG 손해보험 매각 유찰과 관련하여 공적자금 축소 및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금융지주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p>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예보는 MG 손해보험에 대한 3차 매각(~'24.7.19.) 및 재공고(~'24.8.8.) 입찰이 유찰됨에 따라 9월부터 수의 계약을 통한 매각을 추진 중</p> <p>* 예보가 금융지주에 수차례 참여의사를 타진하였으나, 현재까지(~'24.9월) 참여의사를 표명한 금융지주는 없음</p>
<p>79. 다양한 종목의 손해사정사 자격을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p>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현재 5종 → 3종(재물, 차량, 신체) 손해사정사로 간소화</p> <p>○ 3종 모두 합격시 종합 자격증으로 가능</p> <p>※ 공정하고 전문적인 손해사정이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바 자격완화 또는 시험면제 등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80. 은행권의 점포 축소 규제를 증권사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p>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금융회사의 자율적 경영판단사항이며, 증권사의 경우 은행에 비해 점포수가 많지 않아 점포축소 규제를 적용할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p>
<p>81.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지 금융윤리교육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것</p>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24년 실태평가부터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 임직원대상 준법·윤리교육 실시 여부*를 반영</p> <p>* 임직원 1인당 평균 윤리·준법 교육시간, 교육 내용·방식, 법규준수 자가점검 실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p>
<p>82. 민생채무 희망플러스 상담센터 최종 운영 보고서를 분석하고 서민을 위한 대책을 검토하여 보고할 것</p>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요청사항에 대해 의원실 보고완료 ('24.1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생채무 희망플러스 상담센터 운영 보고서의 내용 및 제안사항을 분석하여 향후 정책방향을 보고 완료하였음 ○ 이후 의원실 차원의 추가적인 요청사항은 없었음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83. 가계차주 DSR 현황 자료를 금융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하게끔 할 것</p>	<p>< 처리결과 ></p> <p><input type="checkbox"/> 가계 DSR 현황 관련 자료 제출·설명 완료 ('23.10월)</p>
<p>84. 금융결제원의 안면인식 공동시스템 사업을 최소화하여 시장 원리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안면인식 데이터의 활용이 기본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p>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금융회사는 금융결제원의 안면인식 공동시스템 또는 자체 구축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 중</p> <p>○ 안면인식 서비스는 계좌개설 등 비대면 거래시 실명확인 용도로 업무범위를 최소화하여 운영 중*</p> <p>* 로그인, 계좌이체, 개인정보 변경 등 기타 서비스에는 공동시스템 활용 불가</p>

IV. 2024년도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감사원은 '24년도 9월말 기준 금융위원회에 대하여, 「소극 행정 개선 등 규제개혁 추진실태('23.1.9. ~ '23.2.3.)」, 「금융위원회 정기감사('23.4.24. ~ '23.5.24.)」 및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검사('24.3.18. ~ '24.3.29.)」 3건의 감사를 실시

< 소극행정 개선 등 규제개혁 추진실태 >

지적사항	조치결과
<p>□ 미지급 보험금 등 숨은 금융자산의 마이데이터 연계 필요 (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지급 보험금, 휴면예금 등 개인의 숨은 금융자산을 마이데이터와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 	진행중
<p>□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 부당 운영 (주의, 통보, 징계문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 근거 없이 신청인이 수요조사에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한 후 선별적으로 신청을 접수하거나 사실상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 권한을 행사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수요조사 참여 여부, 소관부서의 사전 검토 결과와 무관하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이 가능도록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매뉴얼”을 개정 ○ 법적 근거 없이 신청 절차를 강화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부당하게 운영한 담당자는 징계처분하고 관련자는 주의 촉구 	진행중

< 금융위원회 정기감사 >

지적사항	조치결과
<p>□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신청 및 수령 관리 불철저 (통보 (비위), 주의, 시정(금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령액 및 가산징수금 총 216,322,720원을 환수 및 징수하고, 부정수령한 관련자를 비위행위에 상응하는 징계, 시간외근무 금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방안을 마련하며, 앞으로는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령 등 소속 공무원의 비위사실을 적발하고도 온정적으로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진행중
<p>□ 법령에 근거없는 조직·인사 과다 운영 등 (주의,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 중인 비정규 부서의 존속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즉시 폐지, 정규 직제화 추진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정부조직관리지침」을 위반하여 비정규 부서를 설치하고 과장급 등 상위직위를 운영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것 ○ 민간전문가 파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행정정보조 목적, 장기파견 등의 부적정한 파견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민간기관의 전문가를 파견제도의 취지와 달리 운영하거나 비공식적으로 파견받아 운영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대외에 보고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것 	진행중
<p>□ 기술금융 평가부실 및 제도성과 미흡 (주의,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평가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거나 평가품질이 미흡한 기술신용평가기관에 대해서는 평가업무 제한, 영업정지 등의 제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완료

지적사항	조치결과
<p>하고, 기술금융 실적평가를 제도의 취지와 다르게 운영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것</p> <p>□ 과징금 징수 및 채권보전조치 업무 등 미흡 (주의, 통보(시정완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징금 체납자의 재산을 조사하지 않거나, 조사 결과 재산을 확인하고도 압류를 하지 않아 시효 완성으로 국가채권이 소멸되게 하거나,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오인하여 결손처분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것 <p>□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 상정 안건 누락 (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징계요구를 받으면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에 상정할 징계대상자 명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 징계 의결 요구 안건을 미상정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p>완료</p> <p>완료</p>

□ 자체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금융위원회는 '24년도 9월말 기준 「보험연구원 종합감사(24.2.19.~2.23.)」, 「한국자산관리공사 종합감사(24.4.15.~4.24.)」, 「금융결제원 종합감사(24.6.24.~6.28.)」 총 3건의 자체감사를 실시

< 보험연구원 종합감사 지적내역 >

지적사항	조치결과
<p>□ 직원 대외활동 사전 승인절차 미준수 (주의 및 제도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 대외활동 시 원장의 승인하에 관련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직원 공지 및 교육을 실시하고 복무관리에 유의할 필요 	완료
<p>□ 수행기사(촉탁직) 근무기록 관리 미흡 (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기사 등 촉탁직원의 체계적 근무기록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차량운행일지 등 오기입 및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 	완료
<p>□ 직원의 대외활동 시 인사위원회 승인 지연 (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채용시 대외활동기준 등 자체규정을 안내하고, 임직원들은 인사위원회 사전 심의건에 대해서는 심의 후 원장의 승인을 거쳐 대외활동을 하도록 유의할 필요 	완료
<p>□ 퇴직금 산정·지급 시 근로기준법과 일관되도록 개선 (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점과 퇴직연금 지급방식도 근로법에서 정한 규약에 따른다는 점을 급여규정에 명시할 필요 	완료
<p>□ 카드포인트 수입 누락 및 회계별 법인카드 혼용해 사용 (제도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연도 내 발생한 카드포인트를 수지계산서 상 잡이익으로 계상하여 처리하고, 예산의 체계 및 통일성있는 운용을 위해 회계별 법인카드 사용 등 자체 방안 강구 필요 	완료

지적사항	조치결과
<p><input type="checkbox"/> 업무추진비 중 경조사비 업무 관련성 여부 모호 (제도개선)</p> <p>○ 업무추진비 중 경조사비 지급과 관련 업무관련자에 국한될 수 있도록 업무관련성 기준을 명확히 하여 운영할 필요</p>	완료
<p><input type="checkbox"/> 임차보증금 계정 재분류 (제도개선)</p> <p>○ `21~`23년 중 재무상태표에 투자자산으로 분류한 임차보증금을 기타비유동자산으로 재분류하고, 회계규정상 재무상태표 계정과목의 분류도 비영리조직회계기준과 일관될 수 있도록 개선 필요</p>	완료
<p><input type="checkbox"/> 위탁연구용역 계약체결방식 부적정 (주의 및 제도개선)</p> <p>○ 연구관리위원회를 통해 위탁연구용역 심의시 계약의 방법에 대해서는 계약부서에서 수의계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할 필요</p>	완료
<p><input type="checkbox"/> 무형자산 인식기준 개선 필요 (제도개선)</p> <p>○ 컴퓨터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해 지출할 때, 무형자산의 기준을 명확히 적용하여 프로그램 갱신 등 계약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 회계처리에 신중할 필요</p>	완료
<p><input type="checkbox"/> 위탁연구용역의 적기 수행을 위해 내부기준 보완 필요 (제도개선)</p> <p>○ 「연구용역 수탁 및 위탁 업무처리기준」을 보완하여 연구용역의 진행현황 및 연구방향을 적기에 파악하고 불필요하게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일 없이 계약기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p>	완료
<p><input type="checkbox"/> 표절을 점검 관련 연구윤리위원회 운영 부적정 (제도개선)</p> <p>○ 「연구윤리기준」에 근거하여 표절을 점검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등 연구윤리위원회 기능을 규정에 맞게 운영함이 타당함</p>	완료

< 한국자산관리공사 종합감사 지적내역 >

지적사항	조치결과
<input type="checkbox"/>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와 관련한 내부통제 강화 필요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거래 제한 부서를 확대하는 등 한국자산관리공사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와 관련한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 	완료
<input type="checkbox"/> 「지방이전 공공기관 이주직원용 사택 운영 기준 준수 요청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환경 요인을 고려하되 「지방이전 공공기관 이주 직원용 사택 운영 기준」을 준수하여 사택 운영 	완료
<input type="checkbox"/> 임직원 외부강의 신고기한 미준수 (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기한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전직원 공지 및 교육을 실시하고 복무관리에 유의할 필요 	완료
<input type="checkbox"/> 국외 여행(출장)시 계획서 및 보고서 홈페이지 미공시 (주의 및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여행요강에 따라 전직원 공지 및 교육을 실시하고, 국외 출장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 관리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 	완료
<input type="checkbox"/> 임직원 겸직 허가 등 관련 절차 미준수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겸직업무 신청자는 기관장 사전 허가 후 겸직하는 것이 원칙이며, 임직원 겸직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관리 감독할 필요 	완료
<input type="checkbox"/> 근로시간면제자 근태관리 개선 (주의 및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시간면제자에게 면제대상 업무를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되, 근로시간면제 대상업무 범위, 출퇴근 등 근태관리에 대한 자체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 	완료

지적사항	조치결과
<input type="checkbox"/> 근로시간면제자 명단 및 개인별 면제시간 통보 명확화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노조 지부는 노동조합 전임간부가 임기 만료 등으로 변경될 경우, 근로시간면제 대상자명단 및 개인별 면제시간을 사전에 사용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통보 	완료
<input type="checkbox"/> 노동조합 임기만료 전임간부 교육과정 부적정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협약」에 따른 전임간부에 대한 대우로 업무와 관련된 교육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교육과제 실시 	완료
<input type="checkbox"/> 국외위탁교육 대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예산으로 훈련비가 지급되는 국외위탁교육 대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 	완료
<input type="checkbox"/> 국외교육 체제비 지급기준 합리화 필요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및 지역별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체제비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 	완료
<input type="checkbox"/> 채용계획 수립 시 인사위원회 미개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계획 수립시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하도록 하여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필요 	완료
<input type="checkbox"/> 제한경쟁채용시 사전협의 미이행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경쟁채용과 제한경쟁채용을 혼동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필요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완료
<input type="checkbox"/> 제한경쟁채용시 채용심의위원회 미운영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계약직 채용에 대해서도 채용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채용과정에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부정합격자 및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필요 	완료

지적사항	조치결과
<input type="checkbox"/> 인사규정 등 관련 규정 정비 필요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지침」 등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내부규정에 반영 필요 	완료
<input type="checkbox"/> 용역 및 물품구매 계약방식 부적정 (관련자 주의/경고 및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기업 및 사회적기업과 용역 및 물품구매 계약 시 부산 및 경상남도내 동일 업종의 자격 보유기업의 참여기회를 제한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계약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예산 집행 	완료
<input type="checkbox"/> 합리적인 예산 편성 등을 통한 경비예산 집행을 제고 필요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도 집행률 등을 고려하되,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경비예산 집행을 제고할 필요 	완료
<input type="checkbox"/> 외부용역 연구보고서 관련 일부 행정절차 관리 불철저 (주의 및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용역 계약시 「용역계약일반조건」 준용 여부를 검토하고 최종보고서 등을 공시, 비공개시 사유 등을 명확히 작성 	완료
<input type="checkbox"/> 임대보증금 유동성 분류 부적절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상환될 것으로 예상되는 임대보증금은 유동부채로 분류되도록 방안을 수립하고 일관된 회계처리를 수행할 필요 	완료
<input type="checkbox"/> 컴퓨터소프트웨어 취득 금액의 무형자산 미계상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향후 유·무형자산을 취득할 때 무형자산 인식 여부를 판단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일관된 회계처리를 수행할 필요 	완료
<input type="checkbox"/> 담보부사채 발행기업 지원시 저신용·중견기업 지원 실적 제고 필요 (개선)	완료

지적사항	조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신용기업 자금조달 지원 등 사업목적에 고려하여, 향후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기업이나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비중을 제고할 필요 □“기업키움이”프로그램 기업 지원 기준금리와 조달 기준금리 간 금리산정 시차개선 필요 (개선) ○ 기관 리스크 관리 및 사업운용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동 사업의 기업지원 기준금리와 조달 기준금리 산정시기를 일치시키거나 산정시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완료

< 금융결제원 종합감사 지적내역 >

지적사항	조치결과
<input type="checkbox"/> 대외활동 시 복무관리 철저 (개선) ○ 대외활동 등을 하는 경우 사전에 출장승인 등 복무관리 철저 필요	완료
<input type="checkbox"/> 국외출장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리방안 마련 (개선) ○ 사원기관의 사례 등을 참고하여 국외출장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	진행중
<input type="checkbox"/> 국내·외 연수자 관리감독 소홀 (주의 및 개선) ○ 연수자의 의무사항(제출서류, 의무복무기간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논문제출 의무화 관련 규정 개정 필요	진행중
<input type="checkbox"/> 공모전형의 예외 규정 정비 필요 (개선) ○ 공모전형에 의하지 않는 채용 사유를 최소화하도록 규정 정비 필요	진행중
<input type="checkbox"/>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제도 운영 부적정 (주의 및 개선) ○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이 「보수규정」내에서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	진행중
<input type="checkbox"/> 업무추진비의 기부 목적 사용 및 현금결제 행태 개선 필요 (개선) ○ 기부금 목적으로 업무추진비가 사용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업무추진비의 현금사용 지양 필요	진행중
<input type="checkbox"/> 휴가보조비 관련 규정 정비 필요 (개선) ○ 휴가보조금 제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완료

지적사항	조치결과
<p>□ 집기·비품 등에 대한 집행 및 관리 미흡 (개선)</p> <p>○ 내규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하는 한편, 불합리한 내규의 경우 보완하고,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내용연수 기준 마련 등)할 수 있는 방안 마련</p>	진행중
<p>□ 기본재산 사용에 대한 절차 준수 필요 (주의 및 개선)</p> <p>○ 정관 개정 등을 통해 기본재산 보호방안을 마련할 필요</p>	진행중
<p>□ 재무정보 객관성·효용성 제고를 위한 회계규정 정비 (권고)</p> <p>○ 회계기준의 재무정보 객관성·효용성 제고 등을 위해 「회계규정」 정비 등 개선방안 마련 필요</p>	진행중
<p>□ 포인트 사용에 대한 사용 및 관리 절차 강화 (개선)</p> <p>○ 매 연말 쌓인 포인트를 선불카드로 교환하여 잡이익으로 계상하고, 사용시에는 비용집행 절차를 준수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p>	완료
<p>□ 퍼블릭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 시 중요도 평가 미실시 (개선)</p> <p>○ 향후 퍼블릭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 시 업무 중요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업무 연속성 계획, 안정성 확보 조치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전자금융감독 규정」 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 수행 필요</p>	완료

V.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금융위원회 산하기관 현황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의 공공기관인
금융위원회 산하기관은 7개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의 공공기관이 아닌
금융위원회 산하기관은 2개

가. 공공기관인 산하기관

- 「공기업」에 해당되는 금융위 소관의 공공기관은 없음
- 「준정부기관」에 해당되는 금융위 소관의 공공기관은 4개
 -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제도 등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유지 지원
 -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부실자산의 효율적 정리를 촉진하고, 부실징후기업 및 구조개선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
 - (한국주택금융공사) 서민·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모기지, 전세대출보증, 주택연금 등 주택금융의 장기적·안정적 공급 지원
 - (신용보증기금) 담보력 부족기업·기술 기업 등의 신용보강을 위한 보증지원
- 「기타공공기관」에 해당되는 금융위 소관의 공공기관은 3개
 - (한국산업은행) 성장동력산업 확충, 시장안전판 역할 수행 등을 위한 정책금융 공급

-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 자금공급 전문역할 수행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 및 재기·자립을 위한 서민금융 지원 총괄

나. 공공기관이 아닌 산하기관

- (금융감독원) 금융위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기관 검사·감독
-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과 경제적 희생 지원

[참고] 공공기관 지정요건

분류		지정요건	금융위 소관 공공기관
공공기관 운영법상 공공기관	공기업	자체수입 50% 이상 직원 300인 이상	0
	준정부기관	자체수입 50% 미만 직원 300인 이상	4
	기 타 공공기관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공공기관	3
기 타 산하기관		-	2

* 「공공기관」은 설립근거, 재정지원(출자·출연·보조), 권한·기능위탁 등의 여부에 따라 지정됨(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VI. 기타 사항

I. 일반 현황

□ 설립 및 목적

- (설립경위) '08.2월,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기능과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기능을 통합하여 금융위원회를 설립
- (설립목적) 금융산업 발전,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 확립 및 금융수요자 보호를 통한 국민경제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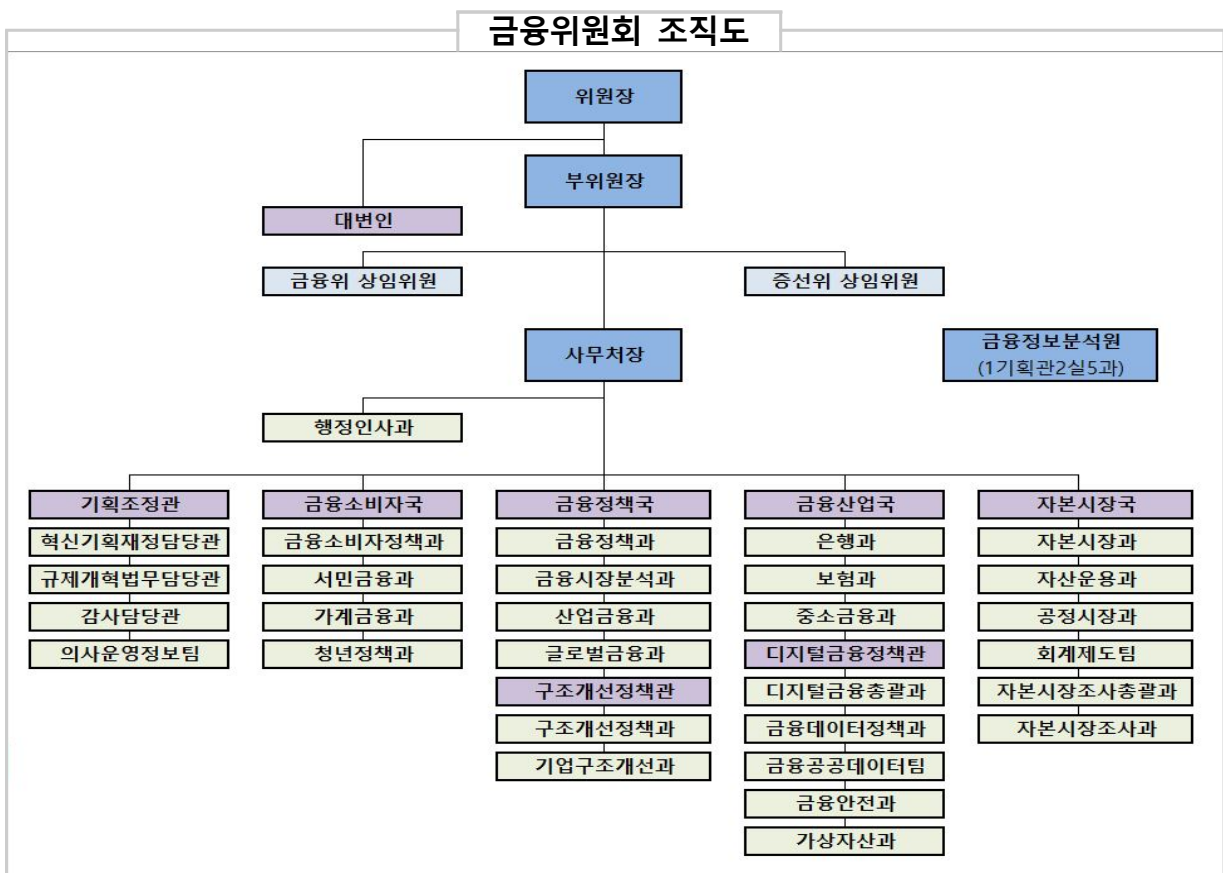
□ 주요업무

- 금융에 관한 정책 및 제도 마련
- 금융기관의 감독 및 검사·제재
- 금융기관의 설립, 합병, 영업 양수·도 등의 인·허가
-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 금융소비자의 보호와 피해구제
-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 등

□ 조직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 및 감독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
 -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2인, 비상임위원 1인, 당연직 4인* 등 총 9인으로 구성
 - * 당연직 :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은행 부총재
 - 금융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대변인 1관 4국 2정책관 26과로 사무처를 구성

-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에 설치되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기업회계기준·감리 등에 관한 업무 수행
 - 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이 겸임), 상임위원 1인, 비상임위원 3인 등 총 5인으로 구성
- (금융정보분석원) 금융위원회 소속하에 설치되어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규제 등에 관한 업무 수행



□ 인원 및 예산

- 정원 : 337명, 현원 : 339.5명 (‘24.9월말 기준)
- 예산 : 일반회계 세입 896억원, 세출 4조 30억원

가. 세입 예산안

□ 2025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1,011억 7백만원으로 2024년 예산대비 114억 78백만원 증가(12.8%)

(단위 : 백만원)

구 분(항)	'24예산(A)	'25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
합 계	89,629	101,107	11,478	12.8
과 태 료	36,135	37,104	969	2.7
과 징 금	49,532	59,907	10,375	20.9
가 산 금	150	150	-	-
기타경상이전수입	3,812	3,888	76	2.0

나. 세출 예산안

□ 202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조 2,408억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2,378억원 증가(5.9%)

(단위 : 백만원)

구 분	'24예산(A)	'25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율 (%)
합 계	4,003,018	4,240,836	237,818	5.9
□ 금융위원회 운영	1,503,018	1,740,836	237,818	15.8
○ 인 건 비	33,037	33,211	174	0.5
○ 기 본 경 비	9,424	9,924	500	5.3
○ 사 업 비	1,460,557	1,697,701	237,144	16.2
□ 내부 거래	2,500,000	2,500,000	-	-
○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	2,500,000	2,500,000	-	-

II. 부서별 주요기능

구 분	주요 기능
대변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 수립 및 조정 · 정책 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정리
기획조정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위 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의 종합 및 조정 · 국회 관계 업무 총괄 및 예산 편성·집행의 조정 · 금융규제개혁업무 총괄, 금융 관련 법령안의 심사, 위원회 운영 ·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단체의 감사, 비상계획업무 총괄
행정인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 공무원의 임용, 복무 등 인사사무조직 관리 ·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금융소비자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소비자정책 및 제도에 관한 기획·총괄 · 서민금융정책의 수립·조정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관련 정책 수립 · 가계대출 취약차주에 관한 정책 수립 및 대부업에 관한 정책 수립·감독 · 금융위 소관 청년정책의 총괄·조정 및 지원
금융정책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정책 및 금융제도의 기획·총괄 · 금융시장 동향 분석 및 정책의 수립 · 중소기업금융정책 및 기업자금 정책의 총괄기획·조정 · 외국 금융당국과의 협력 및 금융중심지 조성 정책 수립
구조개선정책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적자금 관리 및 예금자 보호 정책 수립 · 기업구조조정 관련 정책의 수립·집행 및 기업부실위험 대응
금융산업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업에 관한 정책 수립·감독 · 보험업에 관한 정책 수립·감독 · 상호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업·신용협동조합 등에 관한 정책 수립·감독
디지털금융정책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금융혁신에 따른 금융분야 정책 수립 및 금융혁신 관련 제도 총괄 · 전자금융업 및 금융 IT보안에 관한 정책 수립·감독 · 금융분야 데이터활용·정보보호와 신용정보업에 관한 정책 수립·감독
자본시장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등 자본시장에 관한 정책 수립 및 감독 · 집합투자업 등 자산운용에 관한 정책 수립 및 감독 · 주식회사 외부감사제도 및 공인회계사에 관한 정책 수립 및 감독 · 자본시장 등에서의 불공정거래 조사의 기획·총괄 및 조정
금융정보분석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금세탁방지제도 정책 총괄 및 검사·감독 제도 운영 · 특정금융거래정보 분석 및 제공 · 외국 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 협력

Ⅲ. 소관 법률 현황

구분(총 48개)	법률명
금융정책 관련 (5)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기업금융 관련 (4)	· 한국산업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 신용보증기금법,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구조개선 관련 (6)	·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예금자보호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글로벌금융 관련 (1)	·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은행 관련 (6)	· 은행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보험 관련 (3)	· 보험업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 관련 (2)	· 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금융소비자 보호 및 중소서민금융 관련 (7)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 관련 (5)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담보부사채신탁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회계 관련 (2)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공인회계사법
혁신 관련 (4)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그룹감독 관련 (1)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금융정보분석원 (2)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 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